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쟁점 및 대응방안

2024. 12.

김빛마로 · 김세인 · 장석민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빛마로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세인 선임연구원

장석민 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글로벌 최저한세 현황 및 개발도상국 대응	4
1. 배경	4
2. 제도 개요	7
3. 국가별 도입 현황	9
4. 개발도상국 대응 동향 및 UN 차원 논의	13
III. 개발도상국 주요 쟁점	17
1. 제도적 측면	18
가. GloBE 규칙 분석: IIR/UTPR, QDMTT	19
나. STTR 규칙 비교: 필라2 vs. UNTC	26
다. 세무행정 역량	32
2. 경제적 측면	36
가. 다국적기업 분포 현황: 지역 및 소득그룹별 분포	38
나.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영향: 추가세액 발생·분배 및 FDI	49
IV. 주요국 대응 사례	60
1. 베트남	61
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63

나. 세제혜택 영향	65
다. 기업친화적 환경 구축	67
라. 주변국 대응 현황	69
2. 아프리카: ATAF 대응을 중심으로	71
가. 아프리카의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72
나. 저조한 참여도와 반대 사례	76
다. 향후 대응 방향	81
V. 결론 및 시사점	85
1. 개발도상국의 대응	86
가. 세제혜택 개편	86
나. 비조세혜택 확대	89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92
참고문헌	95

표 목차

〈표 II-1〉 BEPS 프로젝트 구조	6
〈표 II-2〉 BEPS 프로젝트 필라2 주요 추진경과	6
〈표 II-3〉 GloBE 모델규정 요약	9
〈표 II-4〉 지역별 규정 도입 현황	11
〈표 II-5〉 국가별 예상 시행 시기	11
〈표 II-6〉 UN Framework Convention 수립 주요경과	16
〈표 III-1〉 법인세 실효세율별 QDMTT 적용 추가세액 비교	23
〈표 III-2〉 GloBE 규정과 개발도상국의 AMT 사례(필리핀, 케냐) 비교	25
〈표 III-3〉 필라2 STTR과 UNTC STTR 요약 비교	30
〈표 III-4〉 주요국 TADAT 결과(스페인, 벨기에, 페루, 브라질, 케냐, 나이지리아)	34
〈표 III-5〉 글로벌 최저한세 단계별 적용 제안	36
〈표 III-6〉 최종모기업의 지역별 분포	39
〈표 III-7〉 상위 10개국 최종모기업 소재 수	42
〈표 III-8〉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최종모기업 자회사의 지역별 분포	44
〈표 III-9〉 상위 10개국 자회사 소재 수	46
〈표 III-10〉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다국적기업 그룹 자회사의 수익(적자/흑자)	50
〈표 III-11〉 소득그룹별 평균('17~'20) 법인세율-실효세율 중간값 비교	53
〈표 III-12〉 소득그룹별 FDI 유입(2023) 상위 및 하위 10% 해당국 평균 법인세율	58
〈표 IV-1〉 베트남 투자지원기금 시행령 제182호 요약	64
〈표 IV-2〉 베트남 법인세 세제혜택 요약	67
〈표 IV-3〉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ATAF의 아프리카 지원 방향	73
〈표 IV-4〉 ATAF의 DMTT 모델법안 주요 내용 및 장점	73

〈표 IV-5〉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ATAF의 주요 성과	75
〈표 IV-6〉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별 IF 및 ATAF 참여 현황	78
〈표 IV-7〉 아프리카의 저조한 글로벌 최저한세 참여 요인	79
〈표 IV-8〉 아프리카의 국제조세협력 참여 확대를 위한 UN 및 OECD 제안	82
〈표 V-1〉 법인세 세계혜택별 GloBE 실효세율 영향 분석	87

그림 목차

[그림 III-1] 소득산입규칙(IIR) 하향식 접근방식 예시	21
[그림 III-2] 최종모기업 소재국 소득그룹별 분포	41
[그림 III-3] 최종모기업 및 자회사가 위치한 지역별 비중	43
[그림 III-4] 최종모기업의 자회사 소재국 소득수준별 분포	45
[그림 III-5] 최종모기업 및 자회사 소재국 분포	47
[그림 III-6] 법인세율 및 적용 기업별 소득그룹 분포	48
[그림 III-7] 지역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적자기업 비중	51
[그림 III-8] 글로벌 및 지역별 평균 법인세율 추이(1980~2024)	52
[그림 III-9] 국가별 평균 실효세율의 분포	52
[그림 III-10] 소득 그룹별 평균 실효세율 분포	53
[그림 III-11] 법인세율별 국가 분포	55
[그림 III-12] 소득그룹별 글로벌 FDI 유입 비중 추이(2014~2023)	56
[그림 III-13] 소득그룹별 GDP 대비 FDI 유입 비중 추이(2014~2023)	57

I. 서론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MT)의 시행을 결정함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 필라2에 해당함
 - 2021년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의 140여 개 회원국이 필라1·2에 합의하였으나,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30여 개에 불과함

-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BEPS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자신들의 낮은 대표성, 합의 이행을 위한 역량 격차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
 - 개발도상국은 필라2 혜택 분배의 불균형과 국제조세체계 도입을 위한 국가별 환경 고려 미흡 등을 지적함
 - 낮은 최저한세율,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과세우선권, 국가별 세무행정 역량의 고려 부재 등이 문제로 제기됨
 - 많은 개발도상국은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세제혜택을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투자 경쟁력 저하와 전환 과정에서의 분쟁을 우려함

- 이러한 배경에서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OECD/G20 IF에 대응하기 위한 UN 차원의 국제조세 협의체 수립을 촉구함
 - 2023년 11월 국제조세협력을 위한 UN 결의안 통과에 따라 2024년 6월 UN 프레

임워크 협정(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초안이 공개됨

- UN 협정은 국제조세협력 추진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함

- 향후 UN 프레임워크의 구체화에 따라 IF와 국제조세 이행체계의 이원화가 예상됨
- 개발도상국은 국제 조세회피 대응과 무분별한 조세경쟁 방지를 위한 주요 주체이므로, 개발도상국 측면의 쟁점과 대응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 이해가 미흡하고 선진국 중심의 대응과 기대효과에 집중되어 있음
 - 개발도상국의 이탈은 IF 체계 및 필라2의 이행을 저해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가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개발도상국의 관점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제도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과 국가 간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대응 현황을 제도적, 경제적 측면의 쟁점과 주요국 사례를 통하여 검토하고 개발도상국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모델규정(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GloBE) 과 원천지국 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s, STTR)에서 유발되는 쟁점 및 제도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세무행정 역량을 살펴봄
 - 경제적 측면은 OECD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를 기반으로 지역 및 소득별 개발도상국에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확인함
 -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이한 사례를 비교하여 향후 개발도상국의 대응방안을 검토함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I장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II장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및 현황과 개발도상국의 동향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쟁점을 제도적, 경제적 측면으로 검토함
- 제Ⅳ장에서는 베트남과 아프리카의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제Ⅴ장에서 개발도상국 및 우리나라 측면의 종합적인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함

II. 글로벌 최저한세 현황 및 개발도상국 대응

1. 배경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세원잠식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일환임
 - 2013년 OECD와 G20의 협력하에 BEPS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2015년 15개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구성된 최종보고서를 발표함¹⁾
 - 2016년 OECD/G20 IF가 출범하며 BEPS 프로젝트를 주도함
 - IF는 2019년부터 BEPS 대응방향을 필라 접근(BEPS 2.0)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경제 과세를 위한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개념을 확정함

- 필라2는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함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저율과세 발생 시 초과이익에 추가 과세함
 - 2021년 발표한 GloBE 모델규정을 통하여 적용 범위 및 산정기준을 제시함
 - (적용 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

1) 5개 분야(디지털 경제, 기업과세의 일관성,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 투명성 확보, 신속한 이행) 15개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디지털경제 과세(Action 1), 조세조약 남용 방지(Action 6), 고정사업장 과세(Action 7), 이전가격 과세(Action 8~10)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시급성 및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따라 이행의무를 차등 부여함(OECD, 2015a).

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

-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p>① 실효세율 = 관할국별 조정대상조세/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p> <p>② 추가세액 = 추가세액 비율* × 초과이익**</p> <p>*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15%)-실효세율</p> <p>**초과이익: 순글로벌최저한세손익-실질기반소득</p>

- 추가세액은 과세규칙인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소득산업 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 및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ax, QDMTT) 적용에 따라 국가별 과세함

○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규칙 외에도 다자간 조세조약에 적용하는 STTR을 포함함

- STTR은 다국적기업그룹 특수관계자 간 해외거래 지급액에 대하여 저율과세 시 소득 원천지국(개발도상국)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함

□ 필라1의 도입이 연달아 유예되는 반면, 필라2는 구체적인 합의가 추진됨

○ 필라1은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합의 도출이 지연됨

○ 필라2 GloBE 규정 발표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주석서(Commentary), 이행패키지,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eline) 등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함

- 2024년 4월 발간한 통합 주석서(Consolidated Commentary)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시행과 함께 새로운 합의사항을 반영함

〈표 II-1〉 BEPS 프로젝트 구조

구분	주요 내용	
필라1	Amount A ¹⁾	
	Amount B ²⁾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MT)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주: 1) 필라1의 Amount A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초과이익 일부를 시장소재지국 재배분함

2) 필라1의 Amount B는 기본적 판매활동(마케팅·유통)에 대한 이전가격을 단순화·표준화함

자료: 저자 작성

〈표 II-2〉 BEPS 프로젝트 필라2 주요 추진 경과

구분	주요 내용
2012. 6.	G20 정상회의 BEPS 프로젝트 논의 시작
2013. 7.	BEPS 실행계획 로드맵(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발표
2015. 10.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2015 Final Report) 공개
2016. 6.	OECD/G20 IF 출범
2019. 10.~11.	필라1·2 접근법 제안(BEPS 2.0)
2020. 10.	필라1·2 청사진(Blueprint) 공개
2021. 6.	G7,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설정에 합의
2021. 10.	OECD/G20 IF, 필라1·2 성명문(Statement) 공개(136개 회원국 승인)
2021. 12.	글로벌 최저한세 GloBE 모델규정(Model GloBE Rules) 공개
2022. 3.	글로벌 최저한세 주석서(Commentary) 공개
2022. 12.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패키지(Safe Harbours 등) 초안 공개
2023. 2.	필라2 이행을 위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공개
2023. 7.	필라1·2 성명문(138개국의 승인) 발표 필라2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및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수정·보완본 발표
2023. 10.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핸드북(Minimum Tax Implementation Handbook) 공개
2024. 4.	GloBE 모델규정 통합 주석서(Consolidated Commentary) 및 사례(Examples) 공개

자료: 저자 작성

2. 제도 개요

-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가별 발생하는 조세경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일관된 GloBE 모델규정을 적용함
 - 모델규정의 도입은 국가별 재량으로 하되 ‘공통 접근(common approach)’ 방식을 적용함
 - 제도 도입 시 GloBE 규정과 일치하여야 하며 다른 관할국이 도입할 경우 모든 IF 회원국은 수용의 의무가 있음
 - 세부 과세규칙으로 IIR, UTPR 및 QDMTT를 포함함

- GloBE 규정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및 요건, 세율, 통산기준, 계산구조, 특례 등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함²⁾
 -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매출액이 각 7.5억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구성기업이 적용대상이 됨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조직, 연금기금 및 최종모기업이 투자펀드 또는 부동산투자기구이면 제외함
 - 관할국별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산정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비해 낮은 경우 초과이익분에 대하여 추가세액을 결정함
 - 실효세율 산정을 위한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는 각 사업연도의 당기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과 이연법인세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회계상 순손익 및 조정액의 가감으로 계산하되 국제해운 소득 및 그 부수손익은 제외함
 - 납세의무자와 소재지국은 관할국별 GloBE 적용규칙을 따름
 - 소재한 기업이 모기업일 경우 IIR을 따르고 그 외 구성기업이면 UTPR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님

2) OECD,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2021.

- QDMTT를 적용할 경우 관할국 내 모든 구성기업을 납세의무자로 구분함
- 기업의 소재지국은 실질적 관리 장소 또는 설립 장소로 정의하되 다른 관할국에서 QDMTT로 과세되는 경우 제외함

- 이 밖에 계산항목 및 특정 규정은 추가세액을 감소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함³⁾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SBIE)은 과세표준에 직접 반영함
 - 인건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실질 사업활동 지표로 보아 해당 금액의 5%를 소득에서 공제함
 - 최소적용 제외(De minimus exclusion) 및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에 대해 실효세율 계산과 추가세액 납부 의무를 면제함⁴⁾
 - 최소적용 제외 특례는 당해 연도 포함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만유로 및 세전이익 100만유로 미만일 때 추가 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전환기 적용면제는 CbCR 기준 소액요건(평균 매출액 1천만유로, 세전이익 1백만유로 미만) 또는 간이실효세율 요건('24년: 15%, '25년: 16%, '26년: 17% 이상)을 충족하는 관할국에 적용함
 - 이러한 요건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별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으로 고려됨

3) OECD,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2021.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전환기 적용면제)

〈표 II-3〉 GloBE 모델규정 요약

구분	내용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MNE) 구성기업 (최종모기업 및 연결재무제표 포함 기업)
적용요건	직전 4개 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기준 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
적용세율	15%
통산기준	관할국별
계산구조	(실효세율) 관할국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추가세액) 추가세액 비율(최저한세율(15%)-실효세율) × 초과이익(순글로벌최저한 세소득-SBIE) + 당기 추가세액 가산액 - 적격소재국 추가세액(QDMTT)
규칙적용	(IIR) 모기업 추가세액 배분액 = 저율과세기업 추가세액 × 모기업 소득산입비율 (UTPR) 국별 추가세액 배분액 = (추가세액 총액 - 모기업 추가세액 배분액) × 국내 배분비율

주: 1)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관할국 구성기업의 소득·결손 합계임
 2) SBIE는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일정 비율(5%)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결과값이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은 0으로 함
 3) 적격소재국 추가세액(QDMTT)은 추가세액 발생분에 관할국에서 우선 과세함
 4) 모기업의 소득산입 비율 = 1 - (모기업 이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최저한세소득/저율과세기업의 최저한세소득)
 5) 국내배분비율 = 50% × (해당국 종업원 수/모든 국가 종업원 수) + 50% × (해당국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모든 국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
 자료: OECD,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20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기반 저자 작성

3. 국가별 도입 현황

- 2024년 1월부터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가 최초 시행되었으며, 총 35개국이 법제화를 완료하였거나 관련 법안을 입법 중임⁵⁾
 - GloBE 규칙 간의 과세권 적용을 고려하여 IIR을 우선 시행하고 UTPR은 1년 유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임
 -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캐나다, 한국 등 총 24개국이 해당함

5) PwC, "OECD Pillar two country tracker," <https://www.pwc.com/gx/en/services/tax/pillar-two-readiness/country-tracker.html>, 검색일자: 2024. 5. 21.

- IIR과 UTPR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 중 과세권 이전을 우려하여 QDMTT만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2024년부터 스위스, 슬로바키아, 바베이도스가 QDMTT만을 시행하였으며 케냐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임
 - 2021년 140여 개 IF 회원국이 필라2에 최종 합의한 반면, OECD 회원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는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부재함
-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 또는 예정인 반면 그 외 지역의 경우 구체적 도입 계획이 부재함
- 법제화가 추진된 IF 회원국 총 35개 중 27개 국가가 유럽 국가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경우 IIR, QDMTT의 시행 후 순차적으로 UTPR을 적용하는 계획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한국, 호주, 일본, 베트남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이며,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2025년 시행 예정임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저소득국가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입 규모가 큰 특징이 있음
 - 국가별 도입된 규칙이 상이하고 입법 절차가 일부 지연되는 모습을 보임
 -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게 IIR 및 QDMTT를 시행 중이며, 2025년부터 케냐가 QDMTT만을 시행할 예정임
 - 미주 지역의 경우 실질적 도입과 시행은 캐나다가 유일하고, 바베이도스가 QDMTT만을 시행 중임
 - 미국은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사한 자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GloBE 요건과 차이가 존재함⁶⁾
 - 중남미 지역은 다수의 IF 회원국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국별 단위의 구체적인 도입계획이 부재함
 - 중동지역은 아랍에미리트(UAE)가 도입 예정이나 이행 현황은 없음

6) GILTI(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CAMT(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가 있음.

〈표 II-4〉 지역별 규정 도입 현황

(단위: 개)

지역	IF 회원국	IIR	UTPR	QDMTT	법제화
아프리카	18	1	0	2	2
유럽	47	29	28	26	27
아메리카	34	1	1	2	1
아시아-태평양	34	10	6	8	5
유라시아	5	0	0	0	0
중동	9	0	0	0	0
합계	147	41	35	38	35

주: 1) 2024년 5월 기준 IF 회원국은 총 147개국임
 2) 글로벌 최저한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거나 예정 또는 연기 기간을 적용한 국가 포함함
 3) 법제화는 법안의 입법이 완료된 경우만을 포함함
 자료: PwC, “OECD Pillar two country tracker,” <https://www.pwc.com/gx/en/services/tax/pillar-two-readiness/country-tracker.html>, 검색일자: 2024. 5. 21.

〈표 II-5〉 국가별 예상 시행 시기

지역	국가	IIR	UTPR	QDMTT
아프리카	케냐	미정	미정	2025
	남아프리카 공화국	2024	미정	2024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20)	2024	2025	2024
	스페인	2024	2025	미정
	영국	2024	미정	2024
	사이프러스 공화국	2024	2025	2025
	폴란드	2025	2025	2025
	슬로바키아	6년 연기	6년 연기	2024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6년 연기	6년 연기	6년 연기
	리투아니아, 몰타	6년 연기	6년 연기	미정
아메리카	캐나다	2024	2025	2024
	콜롬비아	미정	미정	미정
	바베이도스	미정	미정	2024

〈표 II-5〉의 계속

지역	국가	IIR	UTPR	QDMTT
아시아-태평양	호주	2024	2025	2024
	한국	2024	2025	미정
	베트남	2024	미정	2024
	일본	2024	미정	미정
	말레이시아	2025	미정	2025
	뉴질랜드	2025	2025	2026
	홍콩, 태국	2025	2025	2025
	싱가포르	2025	미정	2025
	인도네시아	2025	2026	2025

주: 유럽연합 회원국 중 5개국(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은 EU 최저한세 지침(제50조)에 따라 IIR 및 UTPR를 적용을 연기함
 자료: PwC, “OECD Pillar two country tracker,” <https://www.pwc.com/gx/en/services/tax/pillar-two-readiness/country-tracker.html>, 검색일자: 2024. 5. 21

- 2024년 9월 IF 회원국 일부는 STTR 다자협약(STTR Multilateral Instrument, STTR MLI)을 체결함⁷⁾
- STTR은 협약상의 적용규칙(treaty-based rule)으로 IF 다자협약에 서명한 관할국은 기존의 양자조약을 모두 개정하는 효과가 있음
 - 현재까지 협약 체결국은 개발도상국 9개국이며, 10개국이 추가로 서명할 예정임
 -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산마리노, 튀르키예가 서명 완료함
 - 벨기에,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태국, 세이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몽골이 추가 체결 예정임

7) OECD, “Multilateral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lar Two Subject to Tax Rule,”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subject-to-tax-rule/multilateral-convention-to-facilitate-the-implementation-of-the-pillar-two-subject-to-tax-rule.html>, 검색일자: 2024. 10. 24.

4. 개발도상국 대응 동향 및 UN 차원 논의

- BEPS 프로젝트는 모든 IF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동의 이행을 추진하되, 국가별 경제 수준 격차를 고려한 접근 필요성을 밝힘
 - OECD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저소득국(low-income economies) 및 중소득국(lower-middle and upper-middle income)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을 분류함
 -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만 4,005달러(USD) 이하인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이를 초과하는 고소득국(high-income)을 선진국으로 봄⁸⁾
 - 특히 필라2의 STTR은 저율과세 시 발생하는 추가 과세권을 개발도상국에 한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최소 세수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제시함⁹⁾
 -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및 시행은 매우 저조함
 - 2024년 총 147개 IF 회원국 중 약 70개 국가가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나,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시행 또는 예정인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케냐 6개국에 불과함

- 개발도상국은 BEPS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IF 내 자신들의 낮은 대표성, 합의 이행을 위한 역량 격차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
 - IF 내 높은 개발도상국 비중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 규칙 간 적용 등 주요 결정이 G20을 중심으로 논의됨
 - 개발도상국의 경제 여건 및 정책 우선순위가 선진국과 상이함에 따라 최저한세율 적용이 국가개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함
 - 많은 개발도상국은 FDI 촉진을 위한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함
 - 필라1의 경우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추가 배분하는 성격으로 기존 정책에 대

8) 세계은행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적용함.

9) OECD, "Multilateral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lar Two Subject to Tax Rule,"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subject-to-tax-rule/multilateral-convention-to-facilitate-the-implementation-of-the-pillar-two-subject-to-tax-rule.html>, 검색일자: 2024. 10. 24.

한 영향은 낮을 수 있으나,¹⁰⁾ 필라2는 시장 규모 등에 따라 세수입 효과는 상이한 반면 공통된 규칙 적용으로 국가별 개발정책을 제한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UN을 통한 국제조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개발도상국은 BEPS 프로젝트를 통한 불법자금의 차단과 추가적인 세원 확보, 국제조세체계를 통한 행정 취약성의 보완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여 왔음
 - 그러나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IF하 혜택 배분의 불균형, 제도 이행 역량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2019년부터 UN 차원의 국제조세 협의체 구성을 촉구함

- 2023년 11월 UN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세협력 결의안(Promotion of inclusive and effective tax cooperation at the United Nations)’을 채택함¹¹⁾
 - 결의안은 조세회피 및 탈세, 불법자금흐름(Illicit Financial Flow, IFF)의 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제적 조세협력 필요성을 명시함
 - 특히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제 조세체계 수립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측면의 필요, 우선순위, 역량의 고려를 강조함
 -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지역 그룹(African Group)을 대표하여 발제하였으며, 결의안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25개국 찬성, 48개국 반대, 9개국이 기권함
 - 찬성국은 중국, 나이지리아, 칠레, 카메룬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 러시아, 싱가포르, 파나마 등이며, 유럽연합(EU) 회원국 다수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반대함
 - 주요 찬성국은 국제 조세체계 담론과 OECD의 다자협력체계가 추진 과정에서부터 개발도상국을 소외시키고 국가별 입장을 배제했다고 지적함¹²⁾

10) 필라1(Amount A)은 매출액 200억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 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국가별 귀속매출액 비중에 비례하여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되, 해당 시장소재국의 귀속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매출귀속기준)인 경우에 과세권 배분함.

11) 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2 December 2023 (A/RES/78/230),” 2023. 12. 28.,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n23/431/97/pdf/n2343197.pdf>, 검색일자: 2024. 7. 21.

12) UN, “Meeting Coverage - Second Committee Approves Nine Draft Resolutions, Including Texts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External Debt, Global Climate, Poverty Eradic

- OECD와 UN의 협력 필요성, OECD 체계의 불균형한 과세권 배분 및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배경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의 문제를 언급함
- IF 주요 협의대상인 아프리카 조세행정 포럼(Africa Tax Administration Forum, ATAF)은 회원국을 대표하여 UN을 통한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 조세체계 노력을 지지함¹³⁾
-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동 결의안 채택이 OECD 프레임워크의 장기적 노력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유발한다고 평가함¹⁴⁾
 - 이들 국가는 새로운 협의체의 구성보다 IF를 통해 구축된 조세체계에 대한 심층평가를 주장함
- OECD/G20 IF와 UN의 새로운 실무그룹 간의 협상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2024년 6월 UN은 ‘국제조세협력 프레임워크 협정의 활동지침(Terms of reference for a 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의 초안(zero draft)을 도출함¹⁵⁾
- UN 프레임워크 협정은 국제조세협력 결의안 및 2015년 개발재원총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을 반영하여 수립 목표를 제시함¹⁶⁾
 - (a) 국제조세협력의 실체(substance)와 절차(process)를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ation (GA/EF/3597),” <https://press.un.org/en/2023/gaef3597.doc.htm>, 검색일자: 2024. 7. 21.

13) ATAF, “ATAF welcomes adoption of draft terms of reference for 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https://www.ataftax.org/ataf-welcomes-adoption-of-draft-terms-of-reference-for-un-framework-convention-on-international-tax-cooperation>, 검색일자: 2024. 7. 21.

14) 12)와 상동

15) UN, “Ad Hoc Committee to Draft Terms of Reference for a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https://financing.desa.un.org/un-tax-convention/second-session>, 검색일자: 2024. 7. 21.

16) UN,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RES/69/313),”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generalassembly/docs/globalcompact/A_RES_69_313.pdf, 검색일자: 2024. 7. 21.

보장하는 기본원칙을 수립함

- (b) 조세 주권을 존중하며 현재 및 미래의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함
 - (c)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국제조세체계 및 국제 조세규칙(international tax rules)을 강화하고, 불법자금흐름의 차단 및 국내자원동원(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DRM)을 강화함
- 특히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프레임워크 협상 과정의 참여와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강조함
- UN 프레임워크 협정은 2025년까지 세부 협정 도출을 위한 논의를 예정함

〈표 II-6〉 UN Framework Convention 수립 주요 경과

시기	주요 내용
~2019	- G77 및 중국 UN의 정부 간 조세기구 수립 지속적 촉구 - UN 아프리카 지역 그룹(African Group, AG) UN Tax Convention 요청
2020	- UN 코로나19 대응방안(Menu of Options)으로 UN Tax Convention 포함
2021	- UN FACTI 패널보고서 UN Tax Convention 수립 권고사항으로 제시
2022	- 제54차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 UN Tax Convention 요청(E/ECA/CM/54/4/Rev.1) - G77 및 중국의 불법자금흐름(IFF) 관한 UN 결의안(A/C.2/77/L.8) 제25항 정부 간 조세협력 기구 수립 요청 - AG UN Tax Convention 수립 결의안(Promotion of inclusive and effective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at the United Nations, A/RES/77/244) 제출 및 UN 총회 채택
2023~2024	- AG 수정 결의안(A/RES/78/230) 제출 및 UN 총회 최종 채택(2023. 11.) - UN 국제조세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ToR 초안(Zero Draft ToR for a 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도출(2024. 6.)

주: FACTI(UN High Level Panel on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Integrity)는 UN 총회 의장국인 나이지리아와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설치한 UN의 고위급 패널임

자료: 저자 작성

III. 개발도상국 주요 쟁점

- 제III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제기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쟁점을 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먼저 제1절에서는 필라2 규칙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도 이행을 위한 세무행정 역량을 살펴봄
 - GloBE 규칙별 개발도상국의 과세권과 이행역량을 분석하고, OECD IF와 UN 조세위원회(UN Tax Committee, UNTC)의 STTR 규칙을 상호 비교함
 - 또한 개발도상국의 세무행정 역량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검토함
 - 제2절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으로의 경제적 영향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 그룹 분포, 추가세액 및 FDI 수혜 가능성, 향후 예측되는 세제혜택 개편 방안 세 가지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다국적기업그룹의 분포를 지역별, 소득그룹별로 분석하고 저율과세가 예상되는 지역을 도출하여 개발도상국 비중을 식별함
- 단, 개발도상국 간에도 서로 다른 상황이 존재하며 쟁점별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고려가 필요함
 -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개발도상국은 조세피난처와 그 외 국가로 구분되며, 이는 국가별 법인세 실효세율 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조세피난처는 유해조세혜택으로 인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율 대비 저율과세가 발생 하는 경우임¹⁷⁾

17) OECD BEPS Action 5 유해조세 제도 폐지의 최종보고서(2015a)에 따르면 유해조세관행 식별의

- 이는 FDI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제공으로 최종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보다 낮아질 수 있는 국가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국가가 존재함
- 본 장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제대상으로의 조세피난처와 그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은 논의 범위에서 제외함

1. 제도적 측면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의 형평성과 국가별 이행 역량 차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일원화된 필라2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모기업의 소재 여부, 세율 수준 등에 따라 국가별 과세권 배분 및 기대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에 대해 여러 개발도상국이 문제를 제기함
 -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내국세법 및 세무행정 운영 자체에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조세경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 새로운 제도하의 소득이전 가능성 또는 조세지원 전환으로 인한 비용은 제도 도입 목적에 문제를 제기함
 - 특히 과세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해당 문제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개발도상국 측면에서 제도의 설계 및 규칙에서 유발되는 구조적 쟁점을 확인하고 제도의 목적과 세부 내용의 부합성을 검토함

네 개 핵심요소는 a) 이동성이 높은 금융, 서비스 활동에 실효세율이 낮거나 부과되지 않는 경우, b) 국내 경제와 분리되어 외국인 또는 특정 활동에 예외 적용하는 경우, c) 적용 제도에 대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는 경우, d) 해당 제도와 과세정보 간 정보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임

- 필라2 GloBE 규칙과 STTR 규칙의 적격요건 및 적용방식 등과 관련된 개발도상국 측면의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 이행을 위한 국가별 세무행정 역량에 대해 논의함

가. GloBE 규칙 분석: IIR/UTPR, QDMTT

- 제II장 제2절에서 논의한 GloBE 규칙의 공통 접근 방식은 개발도상국에 과세권 축소와 규칙 이행의 어려움을 유발함
 - GloBE 규칙은 관할국별 과세권 귀속에 따라 IIR/UTPR과 QDMTT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IIR과 UTPR은 각 모기업 소재지국과 구성기업 관할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나, IIR을 우선 적용하여 통상 모기업 소재지국에 과세권이 있음
 - QDMTT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 구성기업의 관할국에 과세권을 부여함
 - 적용 규칙별 개별도상국의 세무행정 역량, 개발 우선순위 등과 충돌이 발생함

1) IIR/UTPR

- IIR/UTPR은 GloBE 규정의 기본규칙으로 ‘하향식 접근방식(Top-down approach)’을 적용함
 - IIR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우선 과세권을 적용하고, 해당 국가가 IIR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차상위 모기업 관할국으로 과세권이 이전됨
 - 추가세액은 모기업 소득산입비율을 반영하여 과세함
 - 제3자 부분소유모기업(Partially-Owned Parent Entity, POPE)이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관할국이 과세함¹⁸⁾
 - 이는 조세피난처와 같은 저세율국가로의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기업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임

18) POPE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분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간모기업에 해당함.

- UTPR은 모기업이 최종 저율과세되거나 해당 관할국이 IIR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함
- 이 같은 과세방식은 모기업 소재 여부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과세권 배분을 결정함
- IIR은 구성기업이 관할국에서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발생한 추가세액에 대하여 모기업 소재지국으로 과세권을 이전함
 - 모기업 소재지국과 차상위 관할국이 IIR을 도입하는 한 하위기업의 관할국은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한 구조임
 - 특히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부재하므로 과세권 이전이 발생함¹⁹⁾
 - 필라2는 이전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율과세된 소득을 모기업 단위로 추가 과세하는 개념이나, 개발도상국 측면에서 동일 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관할권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개발정책 일환의 세제혜택 적용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율 대비 저율과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권 이탈이 발생함
 - ATAF는 원천지국의 과세권 보장을 이유로 IF와의 논의 과정에서 UTPR의 우선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였음²⁰⁾
 - OECD(2020b)는 IIR을 우선 적용하는 이유로 계산과정의 관할국 수, 실효세율 산정방식, 이중과세 방지 등 규칙의 단순성과 낮은 협력비용을 명시함²¹⁾
- 글로벌 최저한세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관할국 내 이행임을 감안하면 보완적 규칙인 UTPR을 적용한 과세는 기대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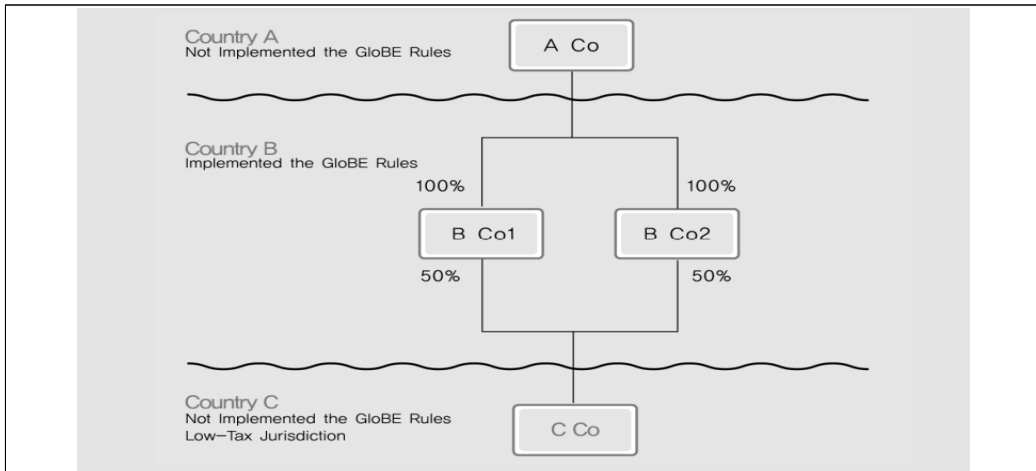
19) Oxfam America, "Are the global tax proposals in the interests of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2021. 8. 16., https://webassets.oxfamamerica.org/media/documents/Global_Tax_Proposals_Oxfam.pdf, 검색일자: 2024. 9. 21.

20) ATAF, "A new era of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 What does this mean for Africa?," 2021. 10. 8., <https://www.ataftax.org/a-new-era-of-international-taxation-rules-what-does-this-mean-for-africa>, 검색일자: 2024. 9. 21.

21) OECD, 2020b, p. 115.

- 모기업이 부재한 경우 IIR/UTPR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낮고, 개발도상국이 UTPR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 국내 투자환경의 불안정성이 우려됨
 -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IIR을 우선 시행하고 UTPR은 주요국의 시행 시기와 맞추어 적용하는 추세임
 - 개발도상국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IIR만을 시행하거나 예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2025년 IIR 및 2026년 UTPR 시행을 고려함
- 또한 IF 회원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UTPR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법체계 부담 및 다국적기업그룹과의 분쟁 가능성이 존재함
 - UTPR은 원천지국의 기존 과세권을 넘어서는 추가 과세로 해석되어 국제법상 관할권 범위, 이중과세 방지조약, 투자협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음²²⁾

[그림 Ⅲ-1] 소득산입규칙(IIR) 하향식 접근방식 예시



- 주: 1) GloBE 규칙 도입 여부는 IIR/UTPR만을 의미함
 2) C국의 C사는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으로, 저율과세가 및 추가세액 발생함
 3) IIR 규칙에 따르면 최종모기업 A사가 위치한 A국이 우선 과세권을 지니나, A국의 GloBE 규칙 미도입으로 이를 도입한 B국이 중간모기업을 기준으로 IIR 적용함
 4) B국은 C사에 발생한 동일한 추가세액 귀속분을 B1사와 B2사에 모기업 소득산입비율(각 50%)을 따라 과세함
 5) C국은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도입하는 경우에도 과세권 없음
 자료: 김준석 외, 『국제조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23, p. 944.

22) Hongler et al., 2023.

2) QDMTT

- QDMTT는 관할국 단위의 과세와 GloBE 규정의 적용 용이성을 목적으로 IIR/UTPR 규칙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개됨²³⁾
 - 국내법에 QDMTT에 부합하는 최저한세를 도입하여 저율과세로 인한 추가세액 발생 시 국내 최저한세의 형태로 징수함²⁴⁾
 - QDMTT는 IIR/UTPR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추가세액을 직접 과세함
 - QDMTT를 국내 최저한세로 적용하기 위한 적격(qualified) 요건은 GloBE 규정의 제10조에 따름²⁵⁾
 - (a) 초과이익을 GloBE 규칙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함
 - (b) 회계연도 중 발생한 국별 초과이익에 대해 최저한세율이 될 때까지 추가세액 산정하여 과세함
 - (c) 모든 해석과 결과는 GloBE 규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관할국은 어떠한 특례도 제공하지 않음
 - OECD는 QDMT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과세권 확보 가능성을 강조함²⁶⁾
 - 추가세액 징수 단계에서 최저한세율에 도달할 때까지 과세하여 소득 원천지국으로 과세권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음
 - 이는 다수의 국가가 UTPR의 도입 없이 국내 최저한세로 QDMTT의 도입을 고려하는 이유임
 - ATAF는 회원국 대상 필라2 대응방안으로 IIR/UTPR을 제외한 QDMTT의 우선 도입을 권장하고 법제화를 위한 초안을 제시함²⁷⁾

23) OECD, "The Pillar Two Rules in a Nutshell,"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pillar-two-model-rules-in-a-nutshell.pdf>, 검색일자: 2024. 9. 21.

24) 국내 최저한세가 QDMTT와 기능적으로 동등한(functionally equivalent) 경우 적용함

25) OECD,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Article 10.1.

26) OECD, "FAQs: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GloBE Rules) - Pillar Two,"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faqs-on-model-globe-rules.pdf>, 검색일자: 2024. 9. 21.

27) ATAF, 2023, p. 2.

- 그러나 BEPS 프로젝트의 목적을 고려할 때, QDMTT 적용으로 인한 부적격국의 이전세원 과세와 추가적 법인세율 인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²⁸⁾
 - QDMTT는 필라2 적용하에 예상되는 세수를 조세 피난처로 귀속시킬 수 있음
 - IIR/UTPR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전된 세원 잠식을 방지하는 목적임
 - QDMTT 적용 시 일정 기간 이전세원에 대한 세수가 경과세국 또는 조세회피 국가에 귀속되어 규제의 본래 목적과 상충될 수 있음
 - 또한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는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 QDMTT를 적용하는 경우, 최저한세율로 과세되어 추가세액이 없는 경우보다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로 추가세액이 발생할 때 총세액은 더 낮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과세권 보호와 적용 간소화 측면에서 모기업이 부재한 개도국 외의 국가도 QDMTT를 도입할 유인이 높아지면서, 최저한세율의 적용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

〈표 III-1〉 법인세 실효세율별 QDMTT 적용 추가세액 비교

	저율과세	최저한세율 일치	법인세 폐지
실효세율	10%	15%	0%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1,000	1,000	1,000
① 예상 법인세액	100	150	0
추가세액비율(최저한세율-실효세율)	5%	0%	15%
초과이익	600	600	600
② 추가세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30	0	90
총세액(①+②)	130	150	90

주: 1)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으로 국가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과는 다르나 실효세율 기준으로 예상 법인세액을 순손익 대비 단순 계산함
 2) 초과이익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SBIE(400)를 차감한 금액임
 3) 계산구조상의 당기추가세액 가산은 생략함
 4) 법인세를 폐지하고 QDMTT 규칙에 따라 15%의 추가세액 비율(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저율과세 또는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총세액이 낮음
 자료: Devereux et al., 2022, p. 7, 〈Table 1〉 기반 저자 작성

28) Devereux et al., 2022, p. 3.

- 이 외에도 적격요건에 부합하는 국내 최저한세의 도입은 개발도상국의 법인세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QDMTT는 IIR/UTPR의 도입과 상관없이 GloBE 계산방식 및 적격요건을 최소기준으로 적용함
 - 국내 최저한세를 도입하더라도 적용상 미흡으로 최종 저율과세 되는 경우 IIR을 도입한 모기업 소재지국으로 과세권의 이동 가능성 있음²⁹⁾
 - 이는 국내 최저한세 도입 후 운영상의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함
 - 저소득국가일수로 국내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제 복잡성과 징수 부담이 증가함³⁰⁾
 - 다수의 저소득국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납세자 규모 등에 따라 과세체계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특징을 보임
 - QDMTT 도입으로 소수의 과세대상에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회계 기준, 세제 변경 및 운영비용 등이 요구됨

- 세제 복잡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국내 법인세 단순화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대형 납세자의 세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법인 대체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는 GloBE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저소득국의 법인세 대체방안으로 제시됨³¹⁾
 - 일반적으로 AMT는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법인의 세부담 축소를 제한하는 목적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이 AMT 세액보다 낮은 경우 부과함
 - GloBE 규정의 적용을 위한 경우, 국내 법인세 자체를 AMT로 대체하여 세제를 단순화하는 방식에 해당함³²⁾
 - 그러나 앞서 언급된 국가 간 법인세 경쟁 우려 외에도 개발도상국의 경제 환경, 세

29) Joachim E., "Pillar 2: QDMTT or Safe Harbour Domestic Minimum Top-Up Tax (SHDMT T)?," 2023. 11. 2., <https://kluwertaxblog.com/2023/11/02/pillar-2-qdmtt-or-safe-harbour-domestic-minimum-top-up-tax-shdmtt/>, 검색일자: 2024. 9. 21.

30) Das, 2024.

31) IMF, 2023, p. 28.

32) AMT의 적용은 법인세를 대체하는 경우(to be 'in lieu' of a CIT)에 해당함(OECD, 2022, p. 24.)

- 수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국가의 법인세 단순화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저소득국가의 세원누락은 대부분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서 발생하며 개발도상국의 세수는 이미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임³³⁾
 - GloBE 규정 준수를 위해 국내법을 단순화 할 경우, 소형 납세자 관리는 미흡한 반면, 세수 확보를 위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거나 관리 가능한 대형 납세자 과세에 치중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AMT가 세수확보의 기능 보다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폐지하는 추세이나,³⁴⁾ 일부 개발도상국은 법인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최소세수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AMT를 시행 중임
- 기존 AMT는 총매출액, 총자산가액 등 단순한 과세표준과 단일세율 등의 형태로 설계됨

〈표 Ⅲ-2〉 GloBE 규정과 개발도상국의 AMT 사례(필리핀, 케냐) 비교

구분	GloBE(QDMTT)	필리핀 AMT	케냐 AMT
납부대상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	사업 개시 후 4년 이상 모든 법인	모든 법인 (소규모법인 제외)
적용요건	매출액 7.5억유로	법인세액이 AMT 세액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액이 AMT 세액보다 낮은 경우
과세표준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이익 및 조정 등	총소득 (gross income)	총매출액 (gross turnover)
적용세율	15%(실효세율)	2%	1%
납부방식	연간 납부	연간 납부	분기별 예납

- 주: 1) GloBE 규정의 과세표준 및 계산방식은 〈표 Ⅱ-3〉과 동일함
 2) 필리핀의 총소득(gross income)은 총수입에서 환입, 할인, 공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임
 3) 케냐의 과세표준은 총매출액(gross turnover)이나 급여, 자산소득 및 임대소득세, 자원개발 사업 소득은 공제함
 4) 케냐 정부는 개발자원동원을 목적으로 2020년 AMT를 도입하고 2021년 시행하였으나 2021년 9월 징벌적 성격 등을 이유로 케냐 대법원이 위헌 판정하며 시행 중단됨

자료: PwC, “Philippines – Corporate – Taxes on corporate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philippines/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 검색일자 2024. 9. 21.; Kenya Revenue Authority, “Minimum Tax will promote Equity, Inclusivity in Tax Administration,” <https://www.kra.go.ke/news-center/blog/1041-minimum-tax-will-promote-equity,-inclusivity-in-tax-administration>, 검색일자 2024. 9. 21.

33) Clements et al., 2015, pp. 117~178.

34) 김학수, 2018. p. 47.

- 개발도상국이 필라2를 도입하는 한 QDMTT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중장기적인 국내재원 동원 및 개발정책 이행계획이 제한될 수 있음
 - 국내재원 동원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에 해당함³⁵⁾
 - 자체적인 재원 동원 역량이 강조되며 조세수입 외에도 FDI,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등의 증대를 포함함
 - 개발도상국 정부는 국가개발전략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조세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함³⁶⁾
 -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개편, FDI 유입 촉진, 수출 증대 등을 위하여 특정 산업군을 선정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조세개혁 및 지원제도를 활용함
 - 국내 법인세 및 조세조약 등을 통하여 해외투자자 유치에 위한 일정 기간 면제, 감면 혜택 등이 존재함
 - GloBE 규정은 국가별 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QDMTT 적격요건에 따라 대상기업에 모든 법인세 혜택이 제한됨

나. STTR 규칙 비교: 필라2 vs. UNTC

- 2020년 OECD는 필라2 적용 규칙의 일환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 보호와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STTR을 제시함³⁷⁾
 -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대표적 조세회피 수단인 조약쇼핑(treaty shopping)

35) SDGs 목표 17 글로벌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the goals)은 그 하위 목표 및 지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 동원 강화, 금융재원 동원, 최빈국(LDC) 투자증진계획 이행,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국가개발계획 지원, 수출량 증가 등을 명시함.

36) Bush et al., 2022, p. 1.

37) OECD, "Cover Statement by the Inclusive Framework on the Reports on the Blueprints of Pillar One and Pillar Two," 2020,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s/beps/cover-statement-by-the-oecd-g20-inclusive-framework-on-beps-on-the-reports-on-the-blueprints-of-pillar-one-and-pillar-two-october-2020.pdf>, 검색일자: 2024. 7. 24.

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Action 6)를 국가 간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이행의무로 설정함

- STTR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특수관계인 간 특정소득 지급액이 최종 저율과세 되는 경우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함
 - 기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대상소득이 최저세율인 명목세율 9% 미만으로 과세될 경우 원천지국의 추가 과세가 가능함
 - 특히 소득 원천지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하여 필라2 구조하에 저소득국가에 최소 세수를 보장하고 GloBE 규칙 적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지님³⁸⁾
 - STTR은 GloBE 규정과 구분되어 IIR/UTPR, QDMTT 규칙보다 우선 적용됨
 -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IF 회원국 간 양자조약에 반영하거나, MLI에 서명한 경우 기존의 양자조약을 모두 개정하는 것으로 봄
 - 국가별 조세조약 차이를 고려하여 기존 OECD 모델 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에 반영하기보다는 별도의 조항으로 설계함
- 필라2 STTR은 최저세율 외에도 적용대상, 대상소득, 적용기준 등을 세부 규정하여 통일된 기준과 국제적 일관된 적용을 추구함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 간 특수관계인에 적용하고 대상소득은 이자, 사용료, 보험소득, 서비스소득 등으로 정의함
 - GloBE 규정상의 제외대상 및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개인인 경우 제외함³⁹⁾
 - 해운소득, 배당·자본소득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비과세대상소득(저수익소득, 원천지국 본사지급액)을 차감함⁴⁰⁾
 - STTR은 최저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제한 일정세율(specified rate)과 조약상의 적용세율의 차이가 발생할 때 추가 과세함
 - (추가세액) 과세표준(대상소득-비과세대상소득) × 조정세율(일정 세율(9%-실효세율)-조약의 다른 규정 적용세율)⁴¹⁾

38) OECD, *Subject to Tax Rule*, 2023b.

39)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조직, 연금기금 및 최종모기업이 투자펀드 또는 부동산투자기구 제외함.

40) 저수익소득(low return)은 대상소득의 관련 비용이 소득의 1.05% 초과할 때 적용함.

- 단 일정 세율 제한에 따라 대상소득 총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최저세율인 9%는 최대세율로 봄⁴²⁾
 - 규칙 적용은 비용 대비 소득액 및 총액 기준 등의 요건으로 규정함⁴³⁾
 - 이자와 사용료를 제외한 대상소득이 수취인의 직·간접비용인 마크업 비율(mark-up threshold) 8.5% 이상인 경우 적용함
 - 중요성 기준(materiality threshold)에 따라 지급 및 수취하는 대상조세 총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때 적용하고, 양국 중 한 국가의 GDP가 400억유로 미만일 경우 총액 25만유로 이상으로 조정함
- 한편 UNTC는 2023년 UN 모델 조세협약(UN Model Tax Convention)상의 STTR 도입을 승인함⁴⁴⁾
- OECD/G20 IF의 STTR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과 세원보호를 목적으로 조항을 신설함
 - UN 모델은 원천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개발도상국 조세조약의 근거가 되어 왔으며, BEPS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2020년 UN 모델 제12B조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 소득(income from automated digital services)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조항을 신설함⁴⁵⁾
 - IF의 STTR 발표 후 적용 범위 및 제한사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2021년부터 UNTC의 STTR이 논의됨
 - UNTC의 제안서에 따르면 UNTC STTR은 필라2 STTR 대비 원천지국에 직접 과세권을 부여하고 조약 체결국 간의 협상의 범위가 넓음⁴⁶⁾

41) 실효세율은 수취인의 거주지국 명목세율에서 조세특혜(비과세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제함.

42) OECD, Subject to Tax Rule, Article 2

43) OECD, Subject to Tax Rule, Article 9&12

44) UN,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Report on the twenty-sixth session (E/2023/45/Add.1-E/C.18/2023/2)," 2023,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13230?v=pdf>, 검색일자: 2024. 9. 21.

45) 국제조세 규범 체계는 선진국 중심의 OECD 모델과 개발도상국 이해관계를 반영한 UN 모델에 따라 양자 조약체제로 발전하였으나, 디지털경제의 확대와 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회피 등과 함께 BEPS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이 요구됨(김정홍, 2023).

- 원천지국은 합의된 최소세율 이하로 과세되거나 특례, 공제, 감면으로 실효세율이 최소세율 이하인 경우 직접 과세할 수 있음
- STTR의 적용대상, 대상소득, 적용세율 등은 양자 조약협상으로 합의하고 별도의 제외사항 없음
- 다만 UN 모델은 디지털서비스 소득 외에도 제12A조를 통해 원천지국의 자문, 기술, 관리 서비스(consulting, technical and management services) 과세권한을 명시하여, 조세조약 체결 시 배제될 수 있는 주요 세원에 대하여 과세권을 보장함⁴⁷⁾

□ 또한 다자간 UN 모델의 주요조항 적용을 간소화하는 목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 (Fast-Track Instrument, FTI)를 제시함⁴⁸⁾

- 주요 조항은 천연자원 및 해외 간접이전에 대한 자본소득, 디지털서비스, 기술 서비스, 부동산 자본소득, 연금 등 특정 소득 과세, STTR 적용 등 필라2 STTR상의 제외소득을 포함함
- FTI는 공통적 도입 의무사항은 아니나 원천지국이 다자간 조약을 개정하는 경우 표준형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46) UN, “Co-Coordinator’s Report: Proposal for the inclusion of a general “subject to tax” rule in the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C.18/2023/CRP12),” 2023, <https://financing.desa.un.org/sites/default/files/2023-04/CRP.12%20UN%20Model%20STTR%20final.pdf>, 검색일자: 2024. 9. 24.

47) 2017년 신설된 제12A조는 원천지국이 체약상대국과 합의된 세율로 과세를 허용하여 조세회피 방지 및 개발도상국 세원확보를 목적으로 함(UN, 2017, Article 12A).

48) UN,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Report on the twenty-eighth session (E/2024/45/Add.1-E/C.18/2024/2),” 2024,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n24/125/63/pdf/n2412563.pdf>, 검색일자: 2024. 9. 24.

〈표 III-3〉 필라2 STTR과 UNTC STTR 요약 비교

구분	필라2 STTR	UNTC STTR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특수관계인)	모든 기업
대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 사용료 -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판매권의 대가로 주는 지급금 - 보험료 또는 재보험료 - 금융보증 또는 기타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수수료 - 임대료 또는 산업, 상업, 과학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지급금 - 마케팅, 조달, 금융중개, 대리, 기타 중개용역의 제공에 대해 수취하는 모든 소득 	모든 종류 소득
과세주체	원천지국(개발도상국)	원천지국
과세방식	소득발생 다음 연도 연간 추가과세 (ex-post annualized charge)	소득 지급 시점 원천징수 과세
적용세율	9%(명목세율)	협지사항
계산구조	(조정세율) 일정 세율(9%-실효세율)-조약상의 적용세율 (추가세액) 과세표준(대상소득-비과세대상소득)×조정세율	(조정세율) 적용세율-거주국 세율 (추가세액) 과세표준×조정세율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지국 과세권 일정세율 제한 - 대상소득액 직·간접비용의 8.5% 초과(이자, 로열티 제외) - 대상조세 총액 100만유로 이상 	거주지국 명목세율이 적용세율 이하 또는 실효세율이 적용세율 이하
적용방식	MLI 또는 양자협약	FTI 또는 양자협약

주: 1) 특수관계인은 일방이 타방의 지분의 50% 이상 또는 제삼자가 양방의 지분을 50% 이상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함
 2) UNTC STTR에 따라 원천지국은 거주국에서 저율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하나 적용대상, 대상소득, 적용세율이 모두 협상 대상임
 3) 원천지국의 과도한 과세권 행사를 막기 위해 향후 UNTC STTR의 적용세율 상한 도입이 고려됨
 자료: OECD, Subject to Tax Rule, 2023; UN E/C.18/2023/CRP12, 2023 기반 저자 작성

□ 필라2 STTR은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조약협상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권을 규정하는 한편, 특정화된 항목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불명확성으로 이행 한계 및 행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⁴⁹⁾

- STTR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소득에 적용하므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업종은 제외됨
 - 대표적으로 디지털서비스가 해당하며 필라1의 도입 지연으로 국가별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통해 과세하는 추세이나 개발도상국은 낮은 도입 역량으로 디지털서비스 과세에서 배제되는 상황임
 - 기타 서비스 및 사용료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함
 - 주요 세원인 특수관계인 간의 기술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 배제될 여지가 있음
 - 그 외에도 제3자를 포함한 거래 지급액, 상품 및 서비스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범위 등의 불명확성이 지적됨
 - 필라2의 경우 UNTC의 STTR과 비교하여 체결국 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제한함
 - 필라2 STTR은 적용대상, 대상소득을 비롯해 세율, 적용요건 등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도적으로 제약하여 조세조약을 통한 국가별 필요 반영이 불가함
 - UN의 FTI를 활용하는 경우, 적용 의무사항은 아니나 원천지국 과세권을 반영한 주요 조항을 참고하여 개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필라2 STTR 적용이 예상되는 조세조약의 수가 적고 원천지국의 세수입 확보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⁴⁹⁾
- 개발도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9% 이하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조약은 이자소득의 경우 19%, 사용료는 20%에 불과한 반면, 기술 서비스 소득에 대한 지급금은 78%의 조약이 0% 세율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거주지국의 명목 법인세율을 고려하면 STTR의 적용이 예상되는 조약은 개발도상국 32개국, 13개국과 체결한 101개로 전체 조약의 6.9%에 불과함
 - 101개 조약 중 20개만이 서비스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하며 그중 7개

49) Picciotto et al., 2024, pp. 1238~1240.

50) IMF, 2023, p. 14.

국가(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 수입 증가가 예상됨

- 이자와 사용료의 경우 각 26개, 27개 조약에 적용 가능함
- 적용 가능한 조약별 거주국의 명목세율로 계산할 때 기대되는 세수입은 현재 원천지국 법인세수의 0.002%에서 최대 0.14%로 예상됨⁵¹⁾

□ 또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추가과세를 위한 원천지국의 높은 행정력이 요구되는 반면 세수입 효과는 낮을 수 있음

-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연간납부로 추가과세를 적용함
- 일정세율 제한으로 수취자 거주국이 내국세율을 인상하거나 특례 및 공제 등을 축소할 경우 세수효과는 감소할 수 있음

다. 세무행정 역량

□ 필라2는 모든 적용 국가에 행정 부담을 유발하나 세무행정 역량이 낮을수록 높은 부담이 발생하여, 일관된 제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됨

- 국제조세체계는 국가별 법령 제·개정 외에도 행정업무 매뉴얼 및 전산 구축, 납세자 안내, 분쟁 대응 등의 행정비용을 유발함
- 또한 행정역량 미흡으로 세원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로 기대되는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음

□ IMF(2023)는 세무행정 진단평가도구(Tax administration Diagnostic Assessment Tool, TADAT)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국제조세체계 도입 역량을 분석함⁵²⁾

51) 거주지국의 법인세 수입/명목세율로 과세소득(taxable profit)을 구하고 대상소득별 비중액(covered payment)을 도출하여 명목세율 기준 추가세액(covered payment X STTR rate) 도출함에 따라 원천지국의 법인세수 대비 비중을 계산함(IMF, 2023, p. 43.)

52) IMF, 2023, pp. 18~19.

- TADAT는 국가별 세무행정체계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문제 식별과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함⁵³⁾
 - 세무행정체계 및 조세정책의 세무행정 영향력 평가를 9개 영역(Performance Outcome Areas, POA) 32개 지표(indicators)와 55개 측정요소(dimensions)로 평가함
 - 특히 자체평가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80개의 평가가 실시됨⁵⁴⁾

- IMF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저소득국가가 필수 행정 절차(등록, 신고, 납부)의 운영·관리 및 디지털화 수준이 미흡하고, 다국적기업 과세를 위한 법제도 기반 및 국제조세 전담부서가 부재함

- 필라2를 비롯한 BEPS 체계 도입은 개발도상국의 낮은 개혁 역량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세무행정 우선순위와 충돌함
 - 개발도상국 과세관청은 제한된 인력 및 자원으로 국내 필요를 중심으로 행정 선진화를 추진 중임
 - 2012년부터 논의된 BEPS 실행계획 등 초기 이행이 미흡한 상태에서 필라1·2를 통한 국제조세체계 도입이 어려움
 - 투입 가능한 역량은 국가개발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작용할 수밖에 없음

-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는 해외투자자 과세 경험이 부족하고 IF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음
 - 필라2 규칙을 도입하여도 회계기준 등 내국세법과의 부합이나 실질적 운영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53) TADAT, <https://www.tadat.org>, 검색일자: 2024. 9. 24.

54) TADAT는 국가, 도시별 과세관청의 활용 외에도 국제기구, 국가 간 세정협력 기준자료로 사용되며,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세정 디지털화 수준과 모범사례 도출 중심의 OECD의 Tax Administration Series (TAS) 대비 개발도상국 세정 현황 평가에 주로 활용됨.

〈표 III-4〉 주요국 TADAT 결과(스페인, 벨기에, 페루, 브라질, 케냐, 나이지리아)

평가지표	스페인	벨기에	페루	브라질	케냐	나이지리아
POA 1. 등록납세자 신뢰도						
1-1. 납세자정보 정확도·신뢰도	B	C	B	C	D	D
1-2. 잠재 세원 파악	A	A	A	C	C	D
POA 2. 효과적인 위험관리						
2-3. 납세순응 위험식별·평가·정량화	A	A	A	D	D	D
2-4. 개선계획 활용 위험 완화	A	C	A	D	D	D
2-5. 위험 완화활동 모니터링·평가	A	A	A	D	D	D
2-6. 과세관청 위험 식별·평가·완화	A	C	B	D	D	D
POA 3. 납세협력 지원						
3-7. 정보 범위·최신성·접근성	B	A	A	B	C	D
3-8. 납세협력비용 경감 이니셔티브	A	A	A	C	D	D
3-9. 상품, 서비스 납세자 의견 수집	A	A	A	D	D	D
POA 4. 신고 적시성						
4-10. 적시 신고율	B+	B	B+	A	D	D
4-11. 전자신고 활용도	A	A	A	A	D	D
POA 5. 납부 적시성						
5-12. 전자납부 활용도	A	A	A	A	D	D
5-13. 효율적 징수 시스템 활용도	A	A	A	A	D	D
5-14. 납부의 적시성	A	C	A	C	D	D
5-15. 체납 규모 및 관리	B	B	C	D	D	D
POA 6. 신고 정확성						
P6-16. 부정확 신고 검증조치 범위	B+	D	D	D+	D	D
P6-17. 신고정확성 개선을 위한 사전 이니셔티브	A	A	C+	B	D	D
P6-18. 부정확 신고 모니터링	A	C	B	B	D	D
POA 7. 분쟁해결 효율성						
P7-19. 절차 독립성·실행성·접진성	A	B+	A	A	D	D
P7-20. 분쟁해결 소요시간	C	D	D	D	D	D
P7-21. 분쟁결과 조치 정도	A	B	A	A	D	D
POA 8. 세수관리 효율성						
P8-22. 정부 세수추계 기여도	A	A	A	C	D	D
P8-23. 세수 분석 시스템 적절성	D	C	D	A	D	D
P8-24. 환급절차 적절성	C+	A	C+	D	N/A	N/A

〈표 Ⅲ-4〉의 계속

평가지표	스페인	벨기에	페루	브라질	케냐	나이지리아
POA9. 책임성 및 투명성						
P9-25 내부 보장 메커니즘	A	C+	A	C+	D+	D
P9-26 세무행정 외부 감독	A	A	B	A	C	D
P9-27 국민 신뢰도	A	C	A	D	D	D
P9-28 활동·결과·계획의 공개	C+	B+	A	D	D	D

주: 1) 국가별 측정 가능한 지표의 비교를 위하여 28개 기준으로 제시함
 2) A부터 D를 기준으로 측정요소를 평가하고 지표의 평균값을 도출함
 3) 스페인, 벨기에를 제외하고 브라질, 케냐, 나이지리아는 도시 단위로 평가함

자료: TADA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Spain, 2020; Belgium, 2024; Rio de Janeiro, Brazil, 2018; Peru, 2017; Nairobi City Country, Kenya, 2022; Borno Stat, Nigeria, 2022), <https://www.tadat.org/performanceAssessmentReports>, 검색일자: 2024. 9. 21.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적 격차를 고려하여 정보 접근성과 제도 활용역량 개선방안이 요구됨⁵⁵⁾
 - 2024년 10월 기준 총 105개 국가가 CbCR(Action 13)의 국가 간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for CbCR)에 서명하였으나 저소득국가일수록 참여가 저조함⁵⁶⁾
 - 또한 자동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의 대상기업 식별, 추가과세 예측 등 정보 활용 역량이 미흡함

-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전환 과정에서의 개도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QDMTT를 통한 국내 최저한세 도입, 최소적용 제외 및 세이프하버 규정 등을 적용하여 도입을 간소화할 수 있음
 - World Bank(2022)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단계별 적용방안

55) IMF, 2023, pp. 28~29.

56) OECD, "Signatories of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 (CBC MCAA) and Signing Date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s/tax-transparency-and-international-co-operation/cbc-mcaa-signatories.pdf>, 검색일자: 2024. 10. 2.

을 제시함⁵⁷⁾

- 국제조세체계하의 우선적인 세원보호, 국가별 현황을 반영한 규칙 도입, 법인세법 최적화의 3단계로 구분함

- 그러나 이 같은 세원보호 및 도입 간소화 또는 순차적 적용방식은 필라2 이행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세무행정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OECD 등 국제기구는 세무행정 분야 국제협력과 개발도상국 BEPS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강조하였으나, 제도 자체의 국가별 차등 도입이나 예외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선진국도 동일한 접근이 가능함

〈표 III-5〉 글로벌 최저한세 단계별 적용 제안

현재	1단계: 세원보호		2단계: GloBE 규칙 도입		3단계: 법인세 개혁	
유지	QDMTT 도입	조세혜택 평가 및 개정	IIR 도입	UTPR 도입	광범위 법인세 개정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하의 조세혜택 최적화

주: 필라2 구조하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현재 단계에 속하나 GloBE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행하는 IF 회원국으로의 세수이전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World Bank, 2022, p. 1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경제적 측면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각 관할권에서 최소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함⁵⁸⁾
 - 이로 인해 세원 이전 유인을 감소시키고, 세제혜택 경쟁에 하한선을 설정하여 법인세 인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종식시키고자 하고 있음⁵⁹⁾

57) World Bank, 2022, pp. 38~41.

58) OECD, <https://www.oecd.org/en/topics/global-minimum-tax.html>, 검색일자: 2024. 11. 5.

- OECD(2024c)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약 1,550억~1,920억달러의 추가 법인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개발도상국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의 경제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⁶⁰⁾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기준점인 7.5억유로는 저소득 및 중소득국(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에 위치한 고액납세자를 포함하기에는 그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있음⁶¹⁾
 -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약 1,50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 수익은 전체 인구의 10%,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는 G7이 60%를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⁶²⁾
 - 추가세액 발생의 요건인 실효세율의 최저한세율은 15%인데, 이는 세계 평균 법인세율인 24%보다 낮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가진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잠재적 우려 요인임⁶³⁾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FDI의 비중 역시 줄어들 수 있음⁶⁴⁾
 -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기존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⁶⁵⁾

- 본 절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개발도상국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1절의 제도적 측면 주요쟁점의 수치적 근거를 제시함
 -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보고서(CbCR)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59) 58)과 상동

60) OECD,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Global Minimum Tax: Summary*, 2024c, p. 4.

61) The Banker, "Global minimum tax: a once-in-a generation opportunity," <https://thebanker.com/Analysis-opinion/Global-minimum-tax-a-once-in-a-generation-opportunity?ct=true>, 검색일자: 2024. 11. 5.

62) Tax Justice Network, "Is today a turning point against corporate tax abuse?," <https://taxjustice.net/2021/06/04/is-today-a-turning-point-against-corporate-tax-abuse/>, 검색일자: 2024. 11. 5.

63) Julie McCarthy, *A bad deal for development: Assessing the impacts of the new inclusive framework tax deal o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Brookings Global Working Paper, No. 174, 2022, p. 14.

64)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2022, pp. 128~129.

65) Tax Foundation, "Pillar Two's Unintended Consequences," <https://taxfoundation.org/blog/pillar-two-unintended-consequences/>, 검색일자: 2024. 11. 5.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기업(UPE) 및 자회사(entities)의 지역 및 소득 그룹별 분포를 분석함⁶⁶⁾⁶⁷⁾

- 실효세율 15% 이하로 인한 추가세원 확보 및 최저한세 도입에 의한 FDI 유입의 변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수혜 가능성을 조사함
 - 실효세율의 경우 산출과정에서 해당 관할국에 위치한 기업의 조정대상 조세가 사용되어 기업 단위에서 실효세율 15% 이하인 경우 추가세액이 발생하나, 본 절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국가 단위의 평균 실효세율 및 법인세율의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한계점이 있음⁶⁸⁾

가. 다국적기업 분포 현황: 지역 및 소득그룹별 분포

- 국가별보고서는 BEPS 실행계획의 최소기준 중 하나인 Action 13에 해당함⁶⁹⁾
 -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관할권의 세무당국에 제출함
 - 수집된 보고서는 세무당국 및 기타 정부기관이 해당 관할권의 기밀성 기준 (Confidentiality Standard)에 따라 단일 데이터셋(single dataset)으로 취합됨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관할권의 세무당국과 공유되며, 고위급 이전가격 및 BEPS 위험 평가에 활용됨
 - OECD에서 가장 최근 공개된 국가별보고서 통계의 기준 회계연도는 2021년임
 - 당시 IF 140개 이상의 가입국 중 101개국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2024년 공개된 데이터에서는 52개 관할권의 통계를 제공하는데, 이는 제출된 모든

66) OECD(2024b)에서는 국가별보고서 기반 분석에 있어 대륙을 아시아 &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네 지역으로만 구분하는데, 해당 지역의 상세분류를 위해 본 챕터에서는 UNSD(유엔통계부)의 Geographic Regions 기준을 추가로 적용

67) 소득그룹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은행의 소득그룹 분류를 활용(회계연도 24년 기준)

68) OECD, GloBE Model Rules Article 5.1.

69) 네 가지 최소기준: Action 5. Harmful tax practices, Action 6. Prevention of tax treaty abuse, Action 13. Country-by-Country Reporting, Action 14. Mutual Agreement Procedure

CbCR의 98%에 해당

- 일부 관할권은 데이터 품질에 대한 우려, 기술적 및 법적 문제 등의 사유로 익명화 및 집계된 CbCR 통계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출을 철회했으며, 다섯 관할권은 2021회계연도 동안 수령한 CbCR이 0건으로 보고⁷⁰⁾

-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보고서 기반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소재지가 명확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기업은 약 7,681개로, 51개국에 분포되어 있음⁷¹⁾⁷²⁾
- 지역별 최종모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럽(23개국), 아시아/오세아니아(15개국), 아메리카(10개국), 아프리카(3개국) 순으로, 유럽이 최종모기업 소재지역의 약 45%를 차지

〈표 Ⅲ-6〉 최종모기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대륙	대륙 상세분류	최종모기업 소재국	최종모기업 수
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4	2,146
	남중앙아시아	1	123
	동남아시아	3	174
	서아시아	5	164
	오세아니아	2	171
	소계	15	2,778

70) 안도라(Andorra), 모나코(Monaco), 산 마리노(San Marino), 세이셸(Seychelles),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Turks & Caicos Islands)

71) OECD(2015c)에 의하면, 특정 요건하 국가별보고서는 최종모기업이 아닌 대리모기업이(SPE, Surrogate Parent Entities) 제출 가능함. 대리모기업을 포함할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최종모기업은 8,030여 개이나, 본문에서는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대리모기업 수치는 제외함

72) OECD(2024b)에서는 국가별보고서 제출국은 52개국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Corporate Tax Statistics 2024에 의하면 체코는 기업의 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표 III-6〉의 계속

대륙	대륙 상세분류	최종모기업 소재국	최종모기업 수
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2	79
	북아메리카	3	2,010
	남아메리카	4	167
	카리브 제도	1	152
	소계	22	2,472
유럽	동유럽	3	15
	북유럽	8	776
	남유럽	5	325
	서유럽	7	1,308
	소계	2	63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1	8
	중앙아프리카	0	0
	북아프리카	1	2
	남아프리카	1	61
	서아프리카	0	0
	소계	33	4,816
총계		51	7,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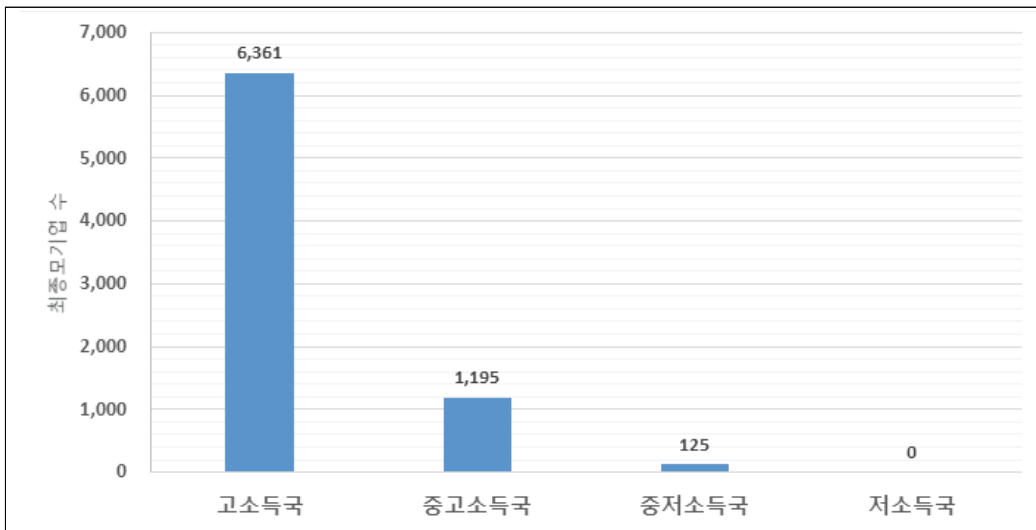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유엔통계부(UNSD),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검색일자: 2024. 10. 19.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최종모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오세아니아(2,778개, 36.17%), 유럽(2,424개, 31.56%), 아메리카(2,478개, 31.35%), 아프리카(71개, 0.92%) 순이었음
-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지역별 분포와 달리 기업의 지역별 비중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세 대륙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최종모기업 분포의 경우, 각 지역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현상을 보임
 -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는 동아시아, 아메리카에서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서는 서유럽이 각각 약 27%, 26% 18%를 차지, 세 지역에만 71%에 달하는 5,500여 개의 기업이 집중되어 있음

- 세계은행에서 분류하는 소득그룹 기준으로는 전체 최종모기업의 약 82%가 고소득국에 위치함
 - 그 외 중고소득국 및 중저소득국은 각각 약 15.5% 및 1.6%, 저소득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22.2%), 일본(11.4%), 중국(9.8%) 세 국가에만 전체의 43%에 달하는 3,300여 개의 최종모기업이 소재하고 있음
 - 상위 10개국으로 확대할 경우 비중은 전체의 68%가량으로 확대되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소득국임을 알 수 있음

[그림 Ⅲ-2] 최종모기업 소재국 소득그룹별 분포

(단위: 개)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for FY 24," 202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7〉 상위 10개국 최종모기업 소재 수

(단위: 개)

순위	국가	지역분류	소득분류	기업 수
1	미국	북아메리카	고소득국	1,721
2	일본	동아시아	고소득국	885
3	중국	동아시아	중고소득국	760
4	독일	서유럽	고소득국	427
5	영국	북유럽	고소득국	390
6	한국	동아시아	고소득국	267
7	프랑스	서유럽	고소득국	241
8	홍콩	동아시아	고소득국	234
9	캐나다	북아메리카	고소득국	220
10	네덜란드	서유럽	고소득국	171
계				5,316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유엔통계부(UNSD),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검색일자: 2024. 10. 19.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소재지가 명확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중 이들의 자회사는 약 91만 2,463개로, 202개국에 분포되어 있음⁷³⁾
 - 자회사가 소재한 지역별 국가의 비중으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65개국), 아프리카(50개국), 유럽(45개국), 아메리카(42개국) 순임
 - 최종모기업의 경우 이들이 소재한 지역의 절반 가까이가 유럽이었던 반면, 자회사는 전반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 지역별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최종모기업의 자회사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오세아니아(36만 5,750개, 40.08%), 유럽(29만 7,119개, 25.68%), 아메리카(23만 4,294개,

73) 자회사 및 국가는 OECD 국가별보고서 통계자료 기준 국가명이 없는 Stateless, Continents로 분류되는 국가와 세계은행 소득그룹 분류상 소득이 분류되지 않은 국가는(Jersey, Kosovo, Bailiwick of Guernsey, Palestinian Authority or West Bank and Gaza Strip, Former Netherlands Antilles 등)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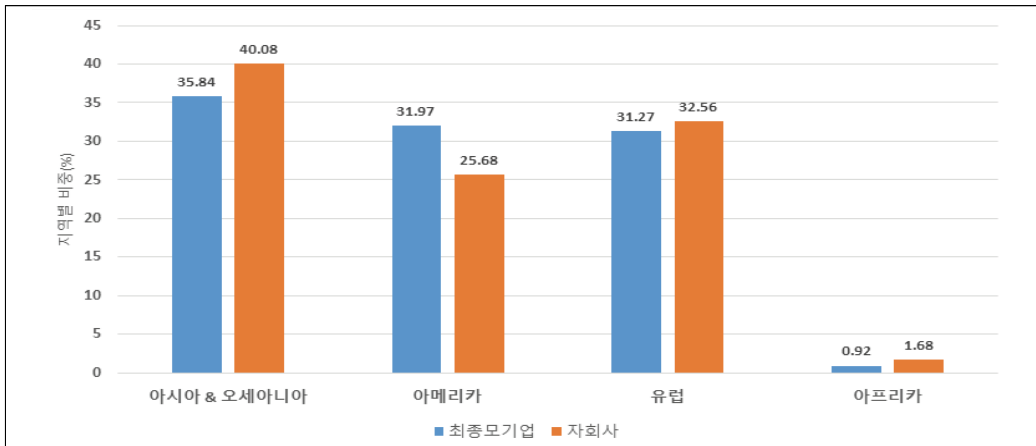
32.56%), 아프리카(1만 5,300개, 1.68%)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자회사의 지역별 분포 역시 최종모기업과 같이 4개 지역 중 동아시아(27%), 북아메리카(30%), 서유럽(19%)이 전체 자회사의 76%에 달하는 71만여 개의 기업이 집중되어 있었음

- 또한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자회사 분포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카리브 제도를 제외한 모든 자회사의 비중이 최종모기업 소재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 최종모기업을 두고 있는 자회사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동아시아에 가장 많은 자회사가 위치해 있었음

[그림 Ⅲ-3] 최종모기업 및 자회사가 위치한 지역별 비중

(단위: %)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유엔통계부(UNSD),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검색일자: 2024. 10. 19.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8〉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최종모기업 자회사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대륙	대륙 상세분류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204,301	28,039	16,900	2,210	251,450
	남중앙아시아	3,222	760	1,206	462	5,650
	동남아시아	20,461	2,134	1,510	186	24,291
	서아시아	10,835	2,770	4,190	920	18,715
	오세아니아	11,572	1,828	2,778	220	16,398
	소계	250,391	35,531	26,584	3,998	316,504
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158	4,697	596	12	5,463
	북아메리카	49,329	147,402	77,573	3,313	277,617
	남아메리카	338	8,209	862	41	9,450
	카리브 제도	37,193	4,893	1,874	115	44,075
	소계	87,018	165,201	80,905	3,481	336,605
유럽	동유럽	130	31	680	47	888
	북유럽	2,115	1,735	41,177	344	45,371
	남유럽	3,369	7,279	18,061	837	29,546
	서유럽	22,543	24,374	129,285	5,065	181,267
	소계	28,157	33,419	189,203	6,293	257,072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0	0	0	312	312
	중앙아프리카	0	0	0	0	0
	북아프리카	0	0	0	93	93
	남아프리카	184	143	427	1,123	1,877
	서아프리카	0	0	0	0	0
	소계	184	143	427	1,528	2,282
총계		365,750	234,294	297,119	15,300	912,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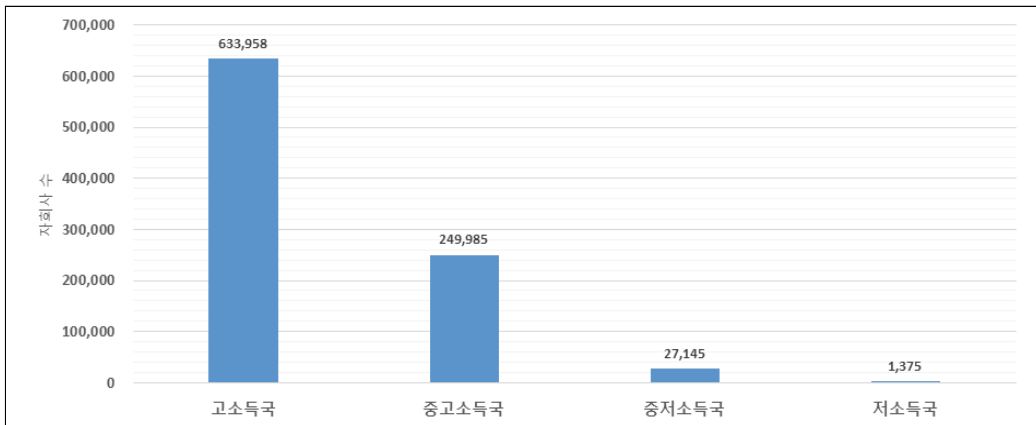
주: 좌측의 대륙(상세분류) 열은 자회사의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대륙명이 표기된 열은 자회사가 위치한 지역을 각각 의미함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유엔통계부(UNSD),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검색일자: 2024. 10. 19.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소득 기준으로 본 자회사의 비중 또한 고소득국에 편중되어 있었음
 - 전체의 약 69.5%가 고소득국에 위치했으며, 중고소득국은 27.4%, 중저소득국(2.9%) 및 저소득국(0.2%)의 자회사 비중은 4% 이하였음

[그림 Ⅲ-4] 최종모기업의 자회사 소재국 소득수준별 분포

(단위: 개)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for FY 24," 202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순위에 차이는 있으나,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자회사 비중 상위 10개국이 최종모기업 상위 10개국과 같았음
 - 중국(19%), 미국(15%), 영국(6.8%), 프랑스(5%), 독일(4.3%) 등 상위 다섯 국가에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46만여 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상위 10개국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66%인 60만여 개의 자회사가 집중되어 있음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을 지역 및 소득그룹별로 접근한 결과, 최종모기업 및 자회사 모두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보임
 - 지역적으로는 최종모기업 및 자회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음
 - 아시아/오세아니아의 경우 동아시아에,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 유럽은 서유럽,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에 각각 가장 많은 다국적그룹이 소재함

- 소득그룹으로는 고소득국, 중고소득국, 중저소득국, 저소득국 순으로 자회사 밀집도가 높았으며, 특히 고소득국의 비중이 70% 가까이 차지함
 - 최종모기업의 경우 저소득국에 소재한 기업은 없었음
- 국가별로 보면 최종모기업 및 자회사 모두 상위 10개국이 전체 기업의 약 65% 이상을 차지하며, 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모두 최종모기업과 자회사 상위 10개국에 속해 있음
 - 미국(북아메리카), 중국(동아시아), 영국(북유럽)의 경우 최종모기업 및 자회사의 비중이 모두 상위 5개국 안에 드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체의 약 37%, 41%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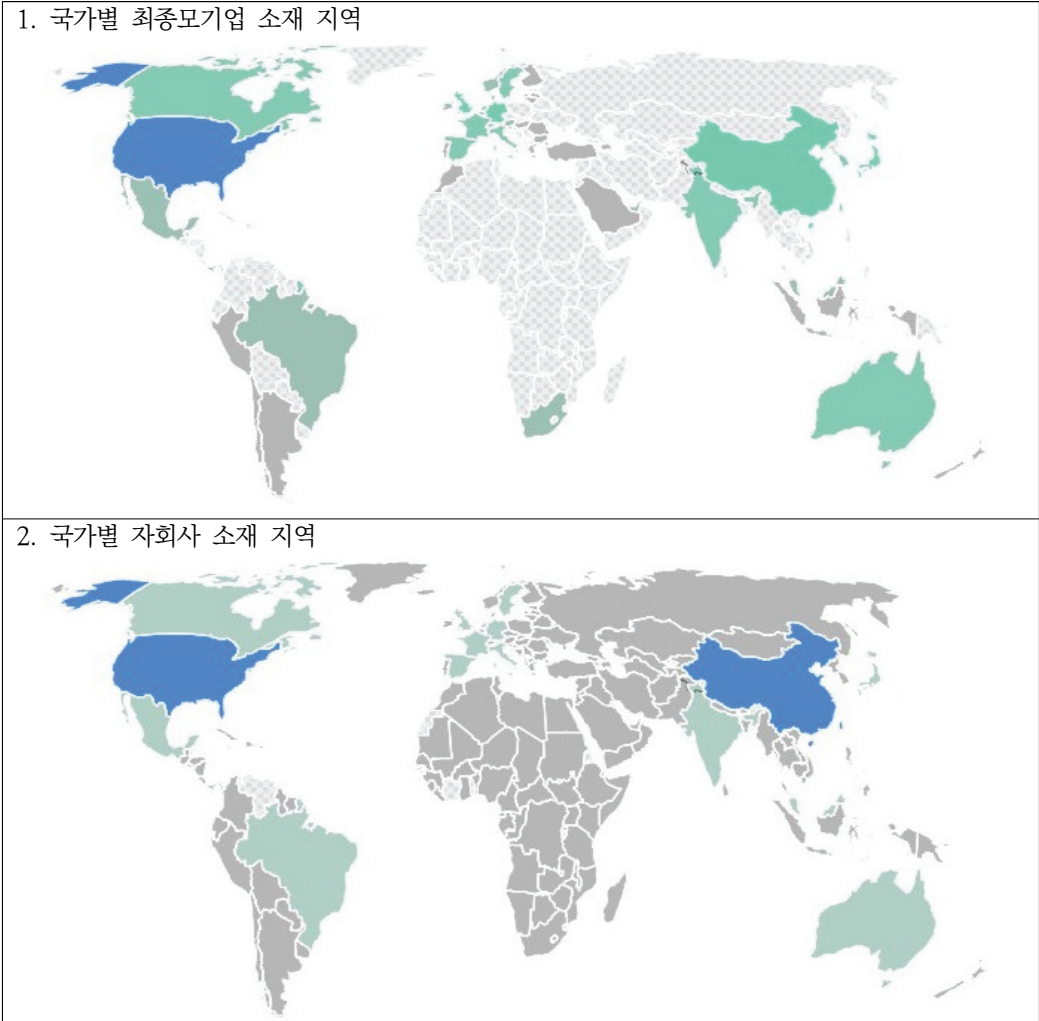
〈표 III-9〉 상위 10개국 자회사 소재 수

(단위: 개)

순위	국가	지역분류	소득분류	기업 수
1	중국	동아시아	중고소득국	176,951
2	미국	북아메리카	고소득국	140,938
3	영국	북유럽	고소득국	61,736
4	프랑스	서유럽	고소득국	46,162
5	독일	서유럽	고소득국	39,546
6	홍콩	동아시아	고소득국	35,219
7	일본	동아시아	고소득국	33,044
8	네덜란드	서유럽	고소득국	24,537
9	호주	오세아니아	고소득국	24,455
10	캐나다	북아메리카	고소득국	23,073
계				605,661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유엔통계부(UNSD),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검색일자: 2024. 10. 19.;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for FY 24,” 202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5] 최종모기업 및 자회사 소재국 분포



주: 파랑, 초록, 회색 순으로 소재한 기업수가 많음을 의미하며, 모자이크 배경인 지역은 해당 지역에 기업이 소재하지 않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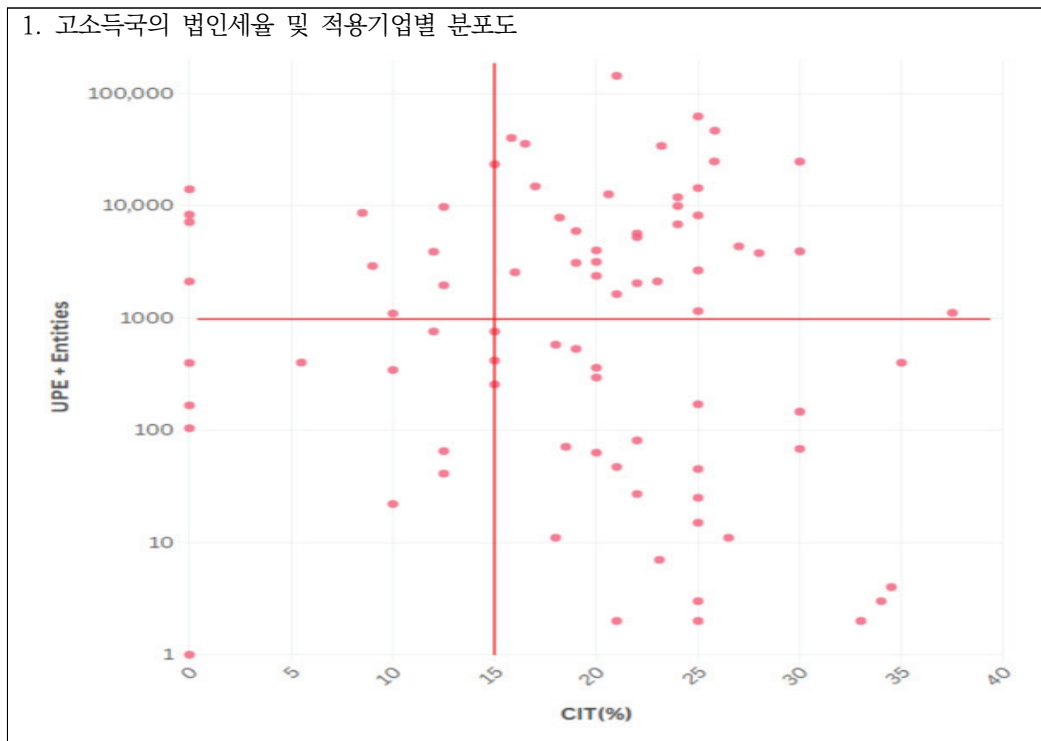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법인세율 및 적용대상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 소득그룹별 국가의 분포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분포도가 고세율-기업 소수 구간으로부터 저세율-기업 다수 구간으로 확산되는 추이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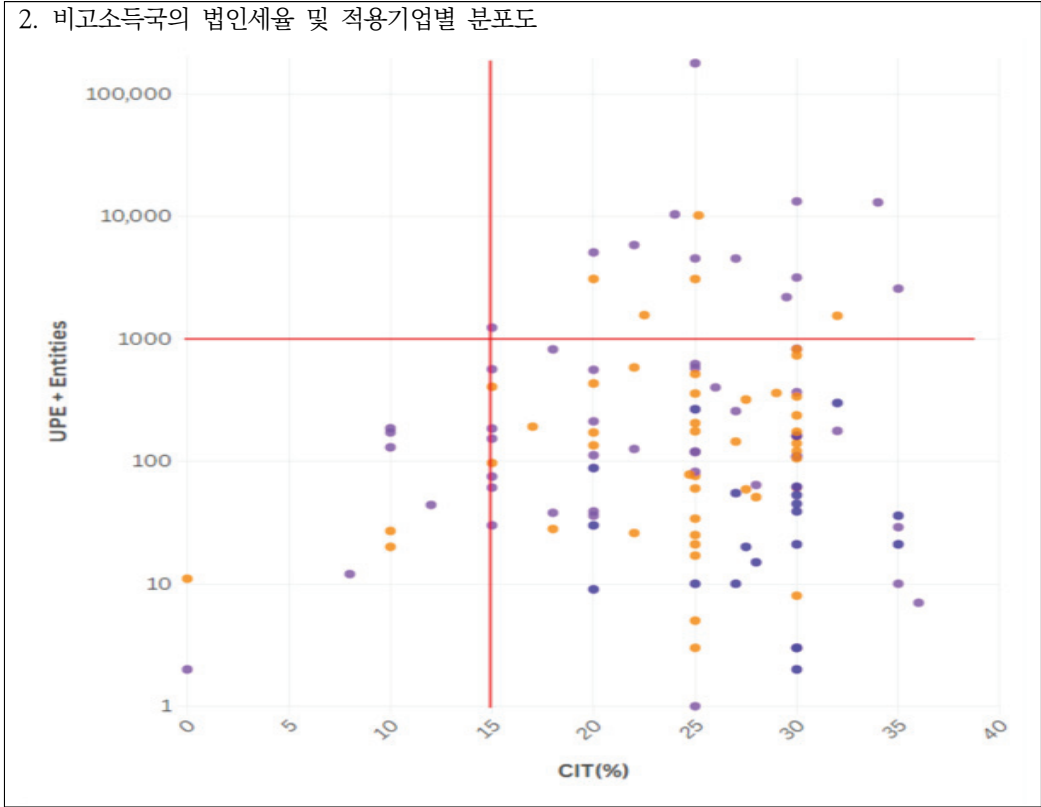
- 고소득국의 경우, 비고소득국 대비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국가가 많았으며, 주요 OECD 회원국은 법인세율 15~25%, 기업 수 1천개 이상인 구간에 위치해 있음
 - 고세율-기업 소수 구간에 위치한 국가는 주로 섬, 령(territory) 형태의 국가가 다수였음
- 비고소득국은 주로 법인세율 15% 이상, 기업 수 1천개 이하인 고세율-기업 소수 구간에 밀집되어 있었음
 - 특히 저소득국의 경우 모든 국가가, 중저소득국은 약 80% 이상이 고세율-기업 소수 구간에 위치함
 - OECD 회원국이 다수 위치한 구간에 있는 비고소득국은 베트남, 멕시코, 남아공 아프리카 등 각 지역별로 GDP 규모가 큰 국가였음

[그림 Ⅲ-6] 법인세율 및 적용 기업별 소득그룹 분포

(단위: 개)



[그림 Ⅲ-6]의 계속



주: 비고소득국 중 파랑색은 저소득국, 중저소득국은 노랑색, 중고소득국은 보라색임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OECD, Corporate income tax rate, 2023.;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3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영향: 추가세액 발생·분배 및 FDI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그룹 자회사의 흑자 및 적자를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국 및 중고소득국에 위치한 자회사는 흑자인 기업 수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반면 중저소득국 및 저소득국의 경우 적자인 기업의 비중이 최소 30% 이상이었으며, 특히 저소득국은 적자인 자회사 비중이 45% 이상으로, 해당 관할권에 대한 법인세 기여도가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음

〈표 III-10〉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다국적기업 그룹 자회사의 수익(적자/흑자)

(단위: 개, %)

대륙 상세분류	고소득국		중고소득국		중저소득국		저소득국		계(% ³)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적자	
아시아 & 오세아니아	92,173 (28.7)	23,664 (7.37)	167,039 (52.01)	24,287 (7.56)	9,335 (2.91)	4,626 (1.44)	20 (0.01)	22 (0.01)	321,166 (100)
아메리카	61,262 (56.7)	22,754 (21.06)	18,565 (17.18)	5,099 (4.72)	210 (0.19)	149 (0.14)	0 (0)	0 (0)	108,039 (100)
유럽	173,480 (78.18)	46,790 (21.09)	1,209 (0.54)	428 (0.19)	0 (0)	0 (0)	0 (0)	0 (0)	221,907 (100)
아프리카	8 (0.07)	17 (0.16)	2,880 (26.81)	1,639 (15.26)	3,446 (32.07)	1,737 (16.17)	543 (5.05)	474 (4.41)	10,744 (100)
계	326,923 (49.39)	93,225 (14.09)	189,693 (28.66)	31,453 (4.75)	12,991 (1.96)	6,512 (0.98)	563 (0.09)	496 (0.07)	661,856 ¹⁾ (100)
소득그룹별 비중(% ²)	77.81	22.19	85.78	14.22	66.61	33.39	53.16	46.84	-

주: 1) 미국, 영국 등은 자국에 있는 최종모기업의 자회사 흑자, 적자 여부를 국가별보고서에 제공하지 않아 두 국가는 제외된 수치이므로, 모든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의 자회사를 반영하지는 않음

2) 소득그룹별 비중은 전체 기업에서 해당 소득그룹의 흑자 또는 적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3) 계의 (%)는 가로축 기준 지역별 흑자 또는 적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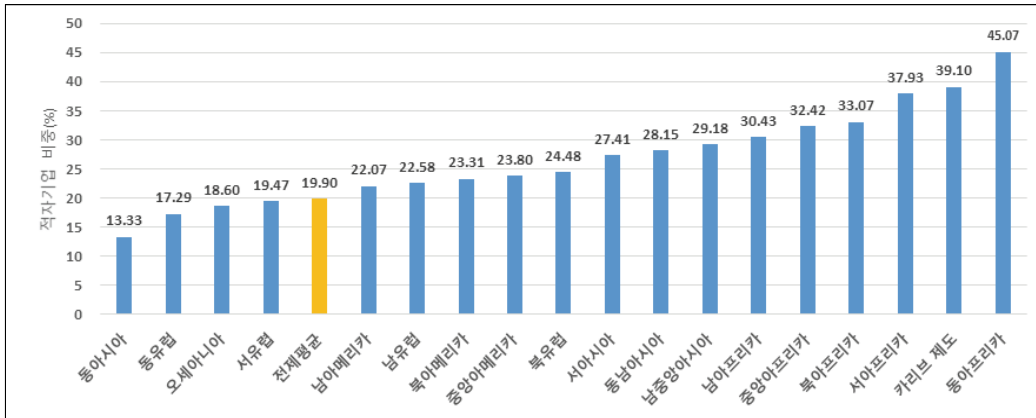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for FY 24, 202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적자 작성

○ 각 지역별 적자 회사 비중의 전체 평균은 약 19%였으며 지역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에서 고소득국이 많이 위치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전체 평균을 하회한 반면, 남중양, 동남아, 서아시아는 모두 25% 이상이었음
- 유럽 및 아메리카는 동유럽과 서유럽이 전체 평균 이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모두 전체 평균 이상이었으나 5%p 이내였음
- 아프리카 전 지역 및 카리브 제도의 경우 모두 30% 이상으로 평균 대비 최소 10%p 이상 높았음

[그림 Ⅲ-7] 지역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적자기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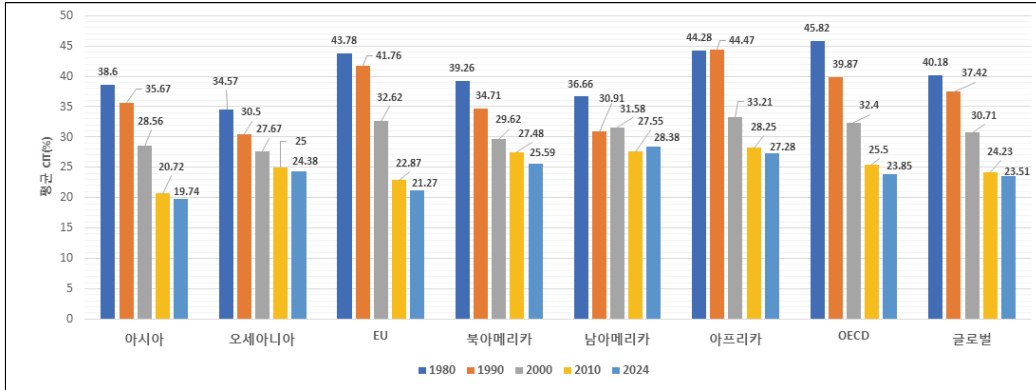


자료: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유엔통계부(UNSD),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검색일자: 2024. 10. 19.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이 소재한 관할권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해당 관할권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통해 추가세액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데, 저소득 국가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및 모든 주요 지역의 평균 법인세율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약 40%대에서 가파르게 감소해 왔으나, 이후로는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현재 약 23%의 세율에서 정체되는 추이를 보임
 -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OECD에서 222개국 관할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평균 실효세율의(Average ETRs, '17~'20년 평균) 중간값(median)은 16.4%였음
 - 분석 대상 관할권 중 절반 이상의(125개) 평균 실효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효세율의 중간값은 고소득국 16.3%, 중고소득국 15.1%, 중저소득국 20.7%, 그리고 저소득국 21.7%였음
 - 투자허브(1.6%)를 제외하고 중고소득국 이하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평균 실효세율이 높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음⁷⁴⁾

[그림 III-8] 글로벌 및 지역별 평균 법인세율 추이(198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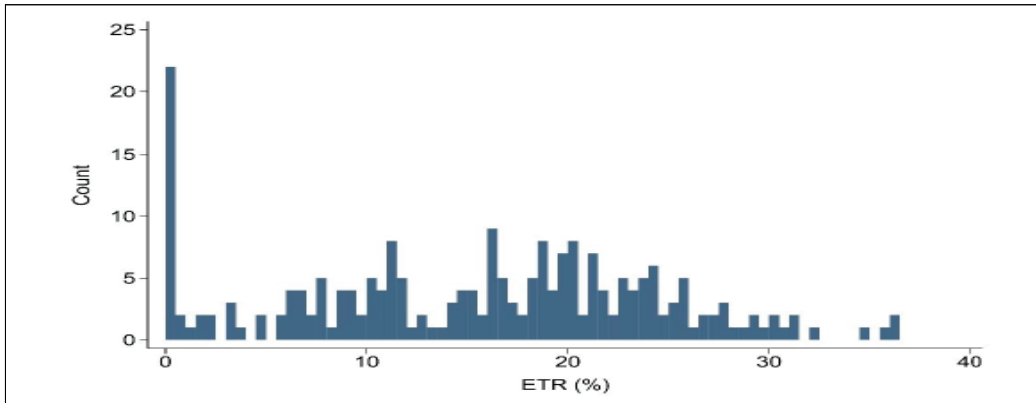


주: 2022년 이전 년도의 법인세율은 일부 관할권의 데이터가 없어 연도별 법인세율 평균에 포함된 국가 수는 상이함. 가령 1980년 평균에는 75개 관할권의 법인세율이 포함된 반면, 2024년은 181개 관할권의 평균임

자료: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Have Declined in Every Region over Time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9] 국가별 평균 실효세율의 분포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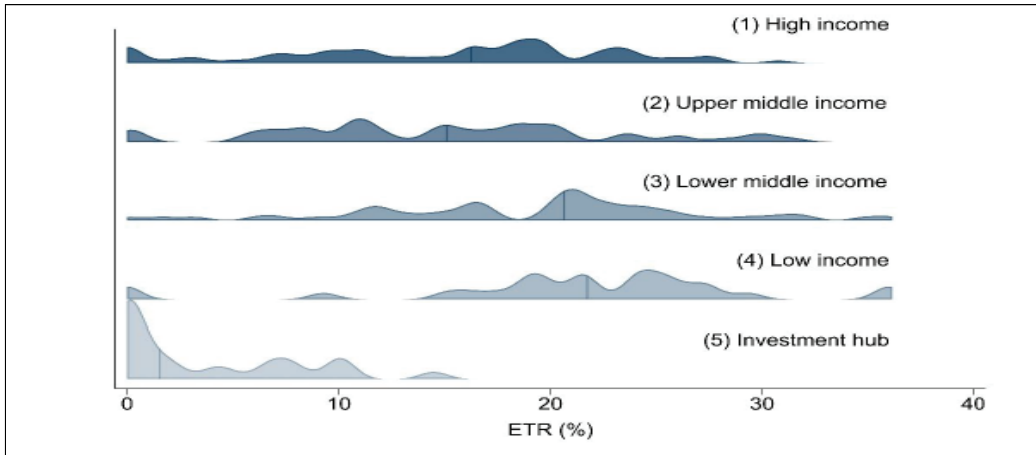
주: 1. 222개의 관할권을 대상으로 한 3년간(17~20) 평균 실효세율(Average ETRs) 분석임
 2. 평균 실효세율의 중간값은 16.4%였으며, 분석 대상 관할권 중 절반 이상의(125개) 평균 실효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Felix Hugger(2023), p. 17, [Figure 4s] 재인용

74) Felix Hugger(2023)에 의하면 총 24개국으로, 2017~2020년간 평균 GDP 대비 총 FDI 유입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국가를 의미

[그림 Ⅲ-10] 소득 그룹별 평균 실효세율 분포

(단위: %)



자료: Felix Hugger(2023), p. 18, [Figure 5] 재인용

- 투자허브를 제외한 소득그룹별 평균(‘17~’20) 명목법인세율과 실효세율의 중간값을 비교할 시, 모든 소득그룹에서 법인세율이 약 4.5~9%p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율과 실효세율 모두 전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그룹일수록 세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이 경우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국가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하이므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Ⅲ-11〉 소득그룹별 평균(‘17~’20) 법인세율-실효세율 중간값 비교

(단위: %)

대륙	CIT(%)	ETR(%)
고소득국	23	16.3
중고소득국	24.12	15.1
중저소득국	25.24	20.7
저소득국	30	21.7

주: CIT 데이터가 OECD에 없는 국가는 Tax Foundation에서 인용함
 자료: Felix Hugger(2023); OECD, Corporate income tax rate, 2023;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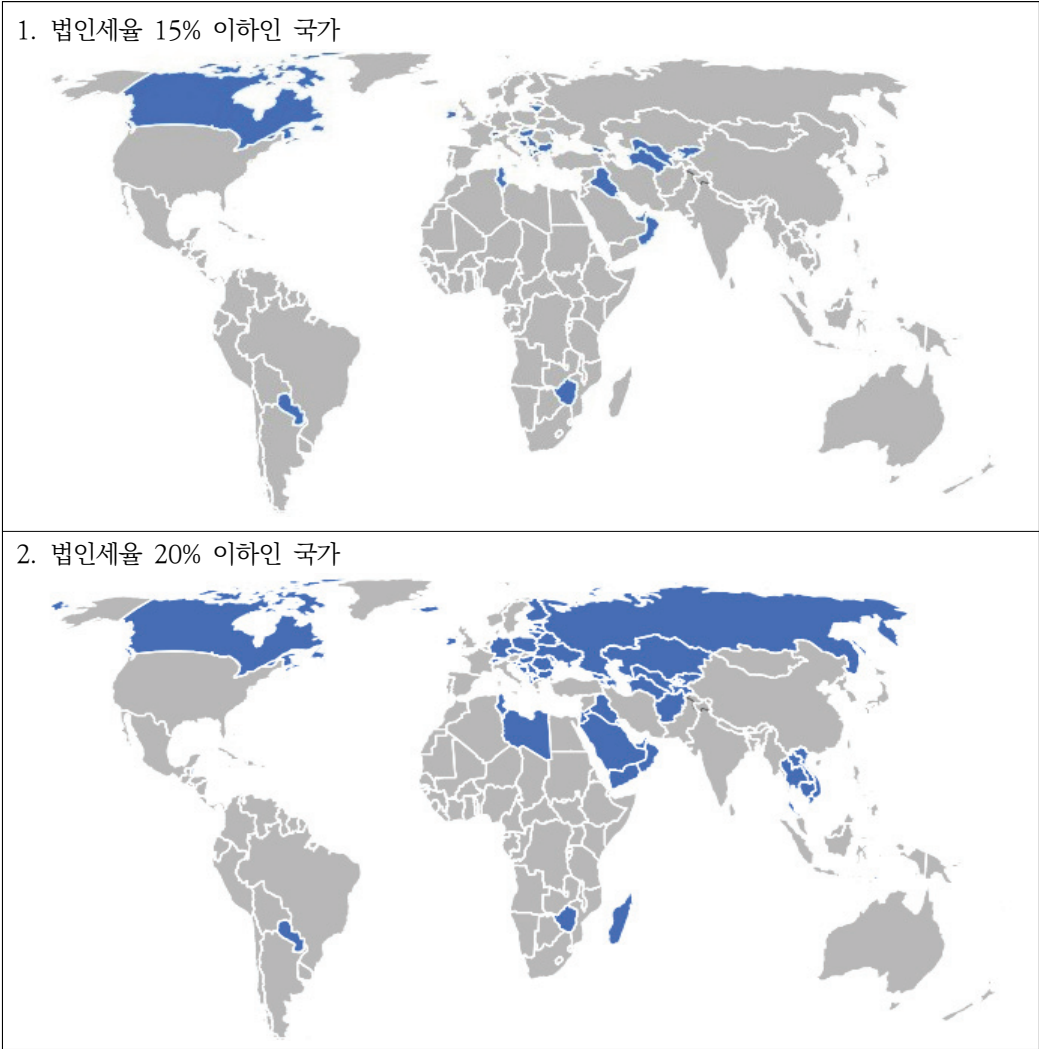
- 소득그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15%(’23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국가는 약 48개국이었음
 - 4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24개국이 고소득국이었으며, 중고소득국(13개국), 중저소득국(5개국), 분류미상(6개국) 순으로, 저소득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⁷⁵⁾
 - 중고소득국의 경우 전체의 약 25%, 중저소득국은 12%만이 예상 실효세율 15% 이하, 저소득국은 모든 국가의 예상 실효세율이 15% 이상으로 나타남
 - 지역적 분포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19개국), 유럽(17개국), 아메리카(10개국), 아프리카(2개국) 순으로 법인세율 15% 이하인 국가가 분포되어 있으며, 각 지역 내 세부지역별로도 고소득국의 비중이 최소 50% 이상을 차지
- ATAF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최저한세율을 20%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15%는 기존 조세피난처의 세율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⁷⁶⁾
 - 법인세율이 20% 이하인 국가는 15% 이하인 국가 대비 36개국이 더 많은 84개국으로, 36개국 중 고소득국 및 비(非) 고소득국은 각각 18개국임⁷⁷⁾
 -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18개국), 유럽(16개국), 아프리카(2개국) 순으로 새롭게 추가된 국가가 많았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의 경우 비고소득국, 유럽은 고소득국의 비중이 컸음
 - 비고소득국 중 저소득국은 3개국만이 새로이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는 저소득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20%를 상회하기 때문

75) 세계은행 소득그룹 분류상 소득이 분류되지 않은 국가

76) Julie McCarthy, 2022, p. 13.

77) 분류 미상 1개국은 제외한 수치

[그림 Ⅲ-11] 법인세율별 국가 분포



주: 청색은 법인세율 15% 또는 20% 이상인 지역, 회색은 15% 또는 20% 이하인 지역을 의미
 자료: OECD, Corporate income tax rate, 2023;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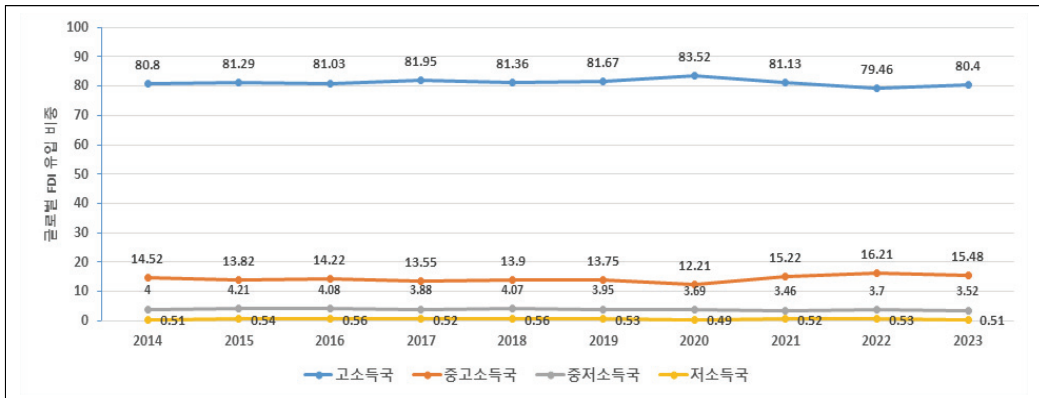
-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은 글로벌 FDI 흐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체 FDI의 유입 측면에서는 지난 10여 년간('14~'23) 고소득국이 전체 FDI 평균 유입의 약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고소득국(약 14.3%)을 제외하면 중저소득국

(약 3.8%) 및 저소득국(약 0.5%)의 비중은 5% 이하였음

- 그러나 동 기간 소득그룹별 FDI 평균 유입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모든 소득그룹에서 최소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비중이 증가해 왔음
- 다만 소득그룹별 GDP 대비 FDI 비중 역시 고소득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GDP 대비 비중이 낮음
- 중고소득국의 경우 고소득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나, 중저소득국 및 저소득국은 고소득국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데, 이는 개발도상국간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FDI 유입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III-12] 소득그룹별 글로벌 FDI 유입 비중 추이(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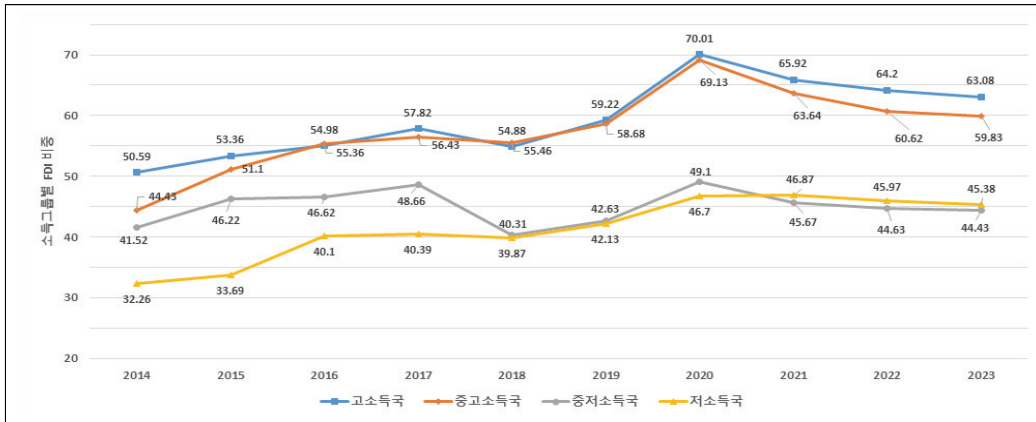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CTA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ward and outward flows and stock, annua, 2014~2023;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for FY 24, 202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13] 소득그룹별 GDP 대비 FDI 유입 비중 추이(2014~2023)

(단위: %)



자료: UNCTA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ward and outward flows and stock, annual, 2014~2023;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for FY 24, 202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FDI 유입(23 기준)과 법인세율의 관계를 보면, 소득그룹별로 FDI 유입이 상위권일 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았음
 - 모든 소득그룹에서는 하위 10% 평균 법인세율이 상위 10% 평균 세율보다 높았으나, 저소득국만 상위 10% 평균 세율이 더 높았음
 - 상위 10% 평균세율에서는 고소득국의 세율이 가장 낮았던 반면, 하위 10% 평균세율에서는 저소득국이 가장 낮았음
 - 고소득국의 상위 10% 법인세율이 타 소득그룹 대비 눈에 띄게 낮은 점을 볼 때, 선진국은 저세율이 FDI를 유치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표 III-12〉 소득그룹별 FDI 유입(2023) 상위 및 하위 10% 해당국 평균 법인세율

(단위: %)

No.	대륙	상위 10% 평균 법인세율	하위 10% 평균 법인세율
1	고소득국	18.97	27.79
2	중고소득국	26.6	28.8
3	중저소득국	24.53	31.4
4	저소득국	30.67	25.67

주: 각 소득그룹별 상위 및 하위 10%에 해당하는 국가의 평균이며, 영세율(0%) 및 데이터가 없는 국가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OECD, Corporate income tax rate, 2023;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UNCTAD(2022)에 의하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글로벌 FDI의 흐름은(flow) 약 1~4% 내외로 감소할 수 있음⁷⁸⁾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분배 측면에서는, 일부의 투자 흐름이 저세율국에서 고세율국으로 이전하면서 개발도상국은 약 1.5~2.9%의 FDI 유입(inflow)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함
 - 재분배로 인한 지역별 혜택은 아프리카(2.4~4.6%) 및 아시아(1.7~3.1%)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이익의 실현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이 세율 차이 감소로 인한 수혜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투자결정 요소인 경제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fundamentals)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함
 - 또한 현재까지 FDI 유치를 위한 주요 경쟁수단이었던 조세혜택이 비조세혜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의한 추가세액 확보 또는 FDI 유입 확대와 같은 경제적 이익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의 다수인 중저소득국 및 저소득국에 소재한 자회사의 비중은 전체의 약

78) FDI Flow는 일정 기간(연간 또는 분기) 동안 기록된 거래(transaction)를 의미

3%에 불과하며, 중고소득국에 소재한 기업을 포함해도 약 30%임

- 이 중 중저소득국 및 저소득국의 경우 적자기업의 비중이 각각 33%, 46%로, 지역별 적자기업 비중 평균을(약 19%) 상회함⁷⁹⁾
- 법인세율 및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소득그룹별 분포도 분석 결과 법인세율 15% 이하인 국가는 고소득국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세율과 해당 국가에 소재한 기업은 적은 경향을 보였음
- 실효세율 역시 222개 관할권 중 절반 이상의 평균 실효세율이 15%를 초과함
 - 소득그룹 기준으로도 투자허브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평균 실효세율이 15% 이상, 그중 중저소득국 및 저소득국은 20% 이상이었음
 - 또한 법인세율 15% 이하인 국가를 보면 48개국 중 절반이 고소득국이었으며, 저소득국은 없었음
 - 통상적으로 법인세율이 실효세율보다 높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 이하인 개발도상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세액은 선진국 대비 적을 것으로 보임
- FDI 유입 측면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다국적기업 그룹 투자의 일부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FDI의 재분배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관련 경제 및 제도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함
 - 소득그룹별 상위 및 하위 10%에 해당하는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을 비교·검토한 결과, 저소득국가의 경우 기타 소득그룹에 속하는 국가와 달리 법인세율과 FDI 유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관측되지 않음
 - 이는 저소득국가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이 FDI 유치에 주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
 - 향후 FDI 유치를 위한 경쟁이 조세혜택 중심에서 비조세혜택으로 전환이 예상되기에,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

79) 적자 및 흑자 구분이 가능한 기업 기준

IV. 주요국 대응 사례

- 제IV장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의 사례로 베트남과 아프리카의 대응방안을 검토함
 - 베트남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FDI에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보임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변화와 기존 법인세 세제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논의를 살펴보고, 주변국의 대응방안을 비교함
 - 아프리카는 개별 국가가 아닌 ATAF라는 조세행정 분야 범아프리카 차원의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한 사례를 다루었음
 - 아프리카는 현재 소수의 국가만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 예정이나, 협상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과 달리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 또한 최근 채택된 UN 국제조세협력 프레임워크 협정을 주도하며 기존 OECD가 중심이었던 국제조세 체제의 변화에도 기여함
 - ATAF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경과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가 저조한 요인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함

- 한편 다수의 주요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부재한 상태임
 - 이는 높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낮거나, OECD/G20 IF 비회원인 국가가 해당함

1. 베트남

- 베트남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소수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임
 - 베트남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를 최초 시행하는 개발도상국이며, 주변국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임
 - GloBE 규칙 중 IIR과 QDMTT를 도입하였으며 UTPR는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없음

- 베트남 정부는 주요 투자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베트남에 모기업을 둔 대상기업을 고려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결정함
 - 베트남의 산업화 및 경제성장은 장기간 수출과 주요국 FDI에 의존하여 왔음
 - 2023년 수출은 전체 GDP 대비 87.2%였으며, FDI 기업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73.1%를 차지함⁸⁰⁾
 - 베트남의 상위 5개 투자국은 싱가포르, 일본, 홍콩, 한국, 중국이며, 일본과 한국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싱가포르, 홍콩이 2025년부터 시행함⁸¹⁾
 - 베트남 정부는 FDI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법인세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투자 경쟁력은 저하되는 반면 과세권 이전으로 세수 효과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베트남의 법정 법인세율은 2000년 32.5%에서 2024년 20%까지 인하되었음
 - 감면혜택 적용에 따라 FDI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이며, 일부 기업은 2.75%에서 5.95% 사이의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기도 함⁸²⁾

8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Viet Nam,"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2&country=VNM>, 검색일자: 2024. 5. 24.;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DI attraction situation in Vietnam and Vietnam's overseas investment in 2023, <https://www.mpi.gov.vn/en/Pages/2023-12-29/FDI-attraction-situation-in-Vietnam-and-Vietnam-s-fh2c25.aspx>, 검색일자: 2024. 5. 24.

81) 상동

82) Le et al., 2024, p. 9.

- 베트남 내 1,017개 FDI 기업 중 122개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에 해당하고 주요 모기업 소재지국은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순임⁸³⁾
- 또한 베트남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상기업인 경우 발생하는 과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⁸⁴⁾
 - 2023년 3월 기준 베트남 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규모는 219억달러이며, 이 중 53.3%를 베트남 국유기업이 실시함⁸⁵⁾
-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되 적극적인 투자유치 대응책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저하를 완화하고자 함
 - 이러한 베트남의 대응은 세제혜택의 적용을 조건으로 FDI를 결정한 기존 다국적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면도 있음⁸⁶⁾
 - 베트남 내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의 47%가 일본(31%), 한국(16%)을 모기업 소재지로 하며, 베트남 정부에 세제혜택 효과 감소에 따른 대응 및 지원보상을 요청함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베트남의 대응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세제혜택상의 영향, 기업친화적 환경 구축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 베트남의 대응은 FDI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의 선행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83) Le et al., 2024, p. 3.

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고찰」,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50747&mid=a30200000000&systemcode=03>, 검색일자: 2024. 5. 21.

85) 주요 투자 대상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채광과 농림어업 분야에 해당함.

86) 조선비즈, 「로이터 “삼성전자-LG전자, 베트남 정부에 최저한세 보상 요구”」,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5/30/UXDNIZPRENDLNJGOWGBIX5YKDM/>, 검색일자: 2024. 5. 29.; Báo Đầu Tư Chứng Khoán, “Samsung CEO: Vietnam should gain the right to tax and add incentives,” https://www.tinnhanhchungkhoan.vn/tong-giam-doc-samsung-viet-nam-nen-gianh-quyen-danh-thue-va-bo-sung-uu-dai-post317957.html#google_vignette, 검색일자: 2024. 5. 29.

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 베트남 정부는 2025년 성장률 목표를 7.0~7.5%로 설정하고 그 도달을 위하여 FDI 유치와 수출 시장 확대를 지속할 계획을 밝힘⁸⁷⁾
 - FDI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높은 기여를 보여 왔으며, 전체 경제구조에서 FDI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⁸⁸⁾
 - 전체 법인 중 FDI 기업 비중은 3.1%이나 GDP 기여도는 18.7%이며, 전체 고용의 35.3% 차지함
 - 특히 베트남의 전자제품, 휴대전화, 컴퓨터, 관련 부품 등 첨단기술 제품 수출의 98%가 FDI 기업에서 기인함
 - 이에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FDI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혀옴

- 대표적인 대응방안으로 2024년 5월 투자지원기금 관련 법령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투자지원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Establishment, management and usage of the Investment Support Fund)」 제182호의 시행을 공포함⁸⁹⁾
 - 투자지원기금은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연구개발의 촉진 및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을 목표로 하며, 현금지원(cash grants) 방식의 특징을 보임⁹⁰⁾
 - 기존의 투자 혜택은 첨단기술 및 연구개발 외에도 포괄적인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87)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vietnam-pm-says-aiming-lift-2024-growth-above-7-2024-10-21/>, 검색일자: 2024. 11. 20.

88) VnExpress International, Recapping a 35-year journey: Vietnam's FDI,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recapping-a-35-year-journey-vietnam-s-fdi-4679123.html>, 검색일자: 2024. 11. 20.

89) 「투자지원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제182호(182/2024/ND-CP)

90) 정부의 현금지원은 법인세 세제혜택과 달리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상조세를 직접 축소하지 않으나 순소득에 반영되어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조치(국가별 통산(jurisdictional blending), SBIE, 세이프하버 전환기 적용 면제 등)를 고려할 수 있음(KPMG, 2025, p. 1).

-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비롯해 기타 토지 및 수면 임대료(Land and water surface rental fees) 감면 등의 형태로 제공됨⁹¹⁾
- 투자지원기금은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추진하되 첨단기술 중심의 우선분야, 최소 투자 자본금, 연 매출, 현지 고용 창출 등의 적용 요건을 통하여 베트남 내 실제 사업활동과 경제적 기여 기준을 강화함
- 지원 대상은 국내외 기금, 기관,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하나,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FDI 유입과 해당 기업을 고려하여 설계됨
- 첨단기술기업의 최소 투자 자본금 기준은 12조동(VND)으로 약 5.2억달러에 해당함
 - 개발도상국 내 첨단기술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투자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위에서 실행되기 어려움
- 기존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베트남 내 사업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금 또는 신규 프로젝트를 착수 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표 IV-1〉 베트남 투자지원기금 시행령 제182호 요약

구분	세부 내용
지원대상 ¹⁾	첨단기술기업, 첨단기술 제품생산 또는 응용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센터 투자,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지원요건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기업: 투자 자본금 12조동, 연 매출 20조동 이상 - 첨단기술 제품생산 프로젝트: 투자 자본금 12조동 이상 - 첨단기술 응용 프로젝트: 투자 자본금 6조동 이상 - 연구개발센터 투자: 투자 자본금 3만억동 이상, 3년 이내 1천억동 지출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근로자 주택, 의료, 교육 시설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연구개발, 제조업, 사회기반시설 - (우선지원 분야) 반도체,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센터, 첨단기술(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 연구개발(혁신 기술, 기술이전, 산업재산권 등록 등), 사회기반시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비 지원(제19조): 교육 및 훈련비, 관련 급여 등 최대 50%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제20조): 해당 비용 최대 30% 지원³⁾ - 고정자산 투자비용 지원(제21조): 기계, 설비 등 추가 투자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10% 지원(3년 이내 사용 조건)

91) 「특별 투자 인센티브 규정(29/2021/QĐ-TTg)」

〈표 Ⅳ-1〉의 계속

구분	세부 내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제품 생산비용 지원(제22조): 부가가치 기준 연간 최대 3% 지원(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추가 지원 가능) - 사회기반시설 비용 지원(제23조): 근로자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비용 최대 25% 지원 - 초기 투자비용 지원(제24조): 해당 비용의 최대 50% 지원 - 우선지원 분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베트남 근로자 고용 및 교육기술 훈련 제공시 등 추가지원 가능⁴⁾
지원기간	기업 및 프로젝트별 최대 5년 지원

- 주: 1) 첨단기술 제품생산 투자사업 결정기준은 베트남 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름
 2) 투자 자본금(Registered investment capital)은 베트남 정부가 평가한 투자 허가(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에 명시된 총 자본 규모에 해당함
 3) 연구개발비는 누진율(120억 동까지 20%, 240억 동 25%, 240억 동 이상 30%) 적용함
 4) 우선지원 분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베트남 근로자 고용 및 교육기술 훈련 제공시 등의 경우 지원 한도, 기간 확대 가능함

자료: 베트남 「투자지원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182호(182/2024/ND-CP) 기반 저자 요약

나. 세제혜택 영향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법인세 세제혜택의 효과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포괄적인 법인세 혜택과 함께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이 되는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왔음⁹²⁾
 - 법정세율 20% 대비 투자 장려 분야에는 우대세율 10%를 15년간 적용하고, 중소기업 및 특정 제조업에는 10년간 17%의 우대세율을 적용함
 - 연구개발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 투자혜택을 적용하며, 일정 기간 법인세 면제, 세율 감면, 우대세율 5%를 최대 37년간 적용함
 - 현재 베트남은 기존 법인세제의 우대세율 및 감면 혜택을 유지하되 글로벌 최저한

92) PwC, “Viet Nam Pocket Tax Book 2024,” <https://www.pwc.com/vn/en/publications/2024/ptb-2024.pdf>, 검색일자: 2024. 5. 20.

세 대상기업에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IIR 및 QDMTT에 따라 과세하는 계획임
 -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효세율 15%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세법상에 명시된 혜택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의 기존 법인세 혜택 효과를 기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투자를 실행한 한국과 일본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기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함⁹³⁾
 - 투자지원기금을 통한 현금성 보상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은 기존 세제 혜택 수준 대비 장기 투자 측면에서 그 상쇄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법인세 혜택을 유지하며 글로벌 최저한세 및 투자지원기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업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을 위한 법인세 개정 또는 그 외 세목을 통한 혜택 전환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으나 국제적 흐름에 따라 향후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의 환경적 특징을 기반으로 토지 임대료 인하 등 비조세혜택의 유지 및 확대를 고려함⁹⁴⁾
 - 베트남은 2023년부터 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대책으로 토지 임대료를 15%에서 30%까지 감면함⁹⁵⁾
 - 그러나 현금 지원의 확대와 함께 다른 세목을 활용한 추가적인 지출은 장기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2024년 일부 상품 및 서비스 업종에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인하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23.5조동(약 9.3억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였음⁹⁶⁾

93) Le et al., 2024, p. 3.

94) 베트남은 토지국유제를 채택하여 모든 토지에 대하여 내·외국인 모두 국가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음.

95) 「2023년 토지 임대료 감면에 대한 결정(25/2023/QD-TTg)」

96)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시장뉴스] 베트남 정부,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8% 지속 제안」, <https://www.kita.net/board/overseasMarketNews/overseasMarketNewsDetail.do?postIndex=18>

〈표 IV-2〉 베트남 법인세 세제혜택 요약

구분	세부 내용
적용대상 ¹⁾	- (장려산업) 사회적 중요 분야(교육, 의료, 스포츠·문화), 첨단기술, 환경, 연구개발, 농업 및 식품가공, 소프트웨어 개발, 재생에너지 분야 등 - (우대지역) 경제특구, 첨단기술특구, 소외지역 신규투자사업 - 대규모 제조 프로젝트 ²⁾
우대세율 ⁴⁾	- 10%(15년): 장려산업 - 17%(10년): 중소기업, 우대지역
특별 투자혜택 ^{3) 4)}	- 연구개발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적용 - 면세(6년), 우대세율(10%) 50% 감면(13년), 고정세율 5%(18년) 적용
추가감면	- 제조, 건설 및 운송업 분야 여성 또는 소수민족 직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비용 감면 - 소외지역에 기술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50% 감면

- 주: 1) 적용대상 중 최소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함
 2) 대규모 제조 프로젝트는 세부조건(① 총 투자금 6천억동 이상, 3년 내 투자금 집행 및 4년째 연 매출 1만억동 이상 또는 3천명 이상 고용, ②총 투자금 1만 2천억동 이상, 5년 내 집행 및 등록기술 심사를 통과)을 충족해야 함
 3) 특별 투자혜택은 순차적으로 면세기간, 우대세율 감면, 고정세율을 최대 37년까지 적용함
 4) 우대세율 및 특별 투자혜택은 최초 수익이 3년 이내 발생하지 않는 경우, 4번째 연도부터는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개시함

자료: 베트남 「법인세(01/VBHN-VPQH)」 기반 저자 요약

다. 기업친화적 환경 구축

- 베트남은 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 저비용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였으나, 행정 복잡성, 미흡한 사회기반 시설 및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⁹⁷⁾
- 2023년 글로벌 품질 인프라 지수(Global Quality Infrastructure Index, GQII)에 따르면 베트남의 평가지수는 0.71로, 전체 185개국 중 52위로 태국(0.86), 말레이시아(0.85), 인도네시아(0.86)보다 낮은 수치임⁹⁸⁾

44096&boardType=0, 검색일자: 2024. 5. 21.

97) Le et al., 2024; VnExpress, Global minimum tax unlikely to inhibit FDI flows into Vietnam: experts,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global-minimum-tax-unlikely-to-inhibit-fdi-flows-into-vietnam-experts-4699587.html>, 검색일자: 2024. 5. 24.

- 베트남의 노동생산성(GDP/시간)은 10달러로 태국(15달러), 말레이시아(26달러), 인도네시아(14달러)보다 낮음⁹⁹⁾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함께 베트남 정부는 규제 완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 지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촉진을 목표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례 결의안(01/2323/NQ-CP)을 발표함¹⁰⁰⁾
 - 해당 결의안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고품질 FDI 유치 및 산업구조 조정을 핵심 실행계획으로 명시함
 - 정책 및 제도상의 중점과제로 행정 간소화, 기업 친화적 법체계 개정, 규제 간소화, 무역 프로세스 최적화 등을 포함함
 - 또한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교통 시스템 확충, 디지털 센터 구축, 정보통신 네트워크 강화,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개선 등을 포함함
- 또한 2024년 1월 발표한 결의안(02/2024/NQ-CP)은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 및 녹색성장 등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함¹⁰¹⁾
 -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산업의 FDI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 규제 완화, 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우대 정책을 연구함
 - 투자 및 사업 활동 시 공공 단일 행정 포털을 통한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간소화 서비스 등의 제공을 목표로함
- 베트남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그룹, 대학과 함께 고속련 노동력 양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IT 부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

98) GQII는 국가별 품질인프라(상품, 서비스 품질 평가 및 관리 거버넌스 총체) 수준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 표준과의 국가 품질인프라의 정합성, 상호운용성, 접근성 및 국가기관 역량, 정책지원 수준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함.

99) ILOSTAT, "Statistics on labour productivity," <https://ilostat.ilo.org/topics/labour-productivity/>, 검색일자: 2024. 5. 24.

100) 「2023년 사회경제개발계획, 국가예산예산,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해결방안 결의안(01/NQ-CP)」

101) 「2024년 기업환경 개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해결책의 지속적 이행에 관한 결의안(02/2024/NQ-CP)」

입¹⁰²⁾

- 특히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관련 분야 FDI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함

라. 주변국 대응 현황

-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 예정인 주변 개발도상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베트남과 같이 현금지원 및 비조세혜택 중심의 대응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¹⁰³⁾
 - 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로 발생하는 추가세수의 50~70%를 중점산업 지원기금으로 투입하는 계획을 밝힘¹⁰⁴⁾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또한 기존 세제혜택을 재평가하고 비조세혜택의 확대를 검토 중임¹⁰⁵⁾
 - 말레이시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성 환급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ualifying Refundable Tax Credits, QRTC)를 검토 중임¹⁰⁶⁾

102)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 to soon implement proje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semiconductors," <https://www.mpi.gov.vn/en/Pages/2024-5-3/Vietnam-to-soon-implement-project-on-human-resourc3s3j0h.aspx>, 검색일자: 2024. 5. 24.

103) UNCTAD(2024)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동남아시아(싱가포르 제외) FDI 평균 유입액 기준 상위 5개국은 인도네시아(221억달러), 베트남(168억달러), 말레이시아(97억달러), 필리핀(79억달러), 태국(55억달러) 순임

104) Bangkok Post, "Bid to close profit shifting loophole,"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780519/bid-to-close-profit-shifting-loophole>; EY, "Thailand plans to implement global minimum tax rules under OECD BEPS 2.0 Pillar Two," https://www.ey.com/en_gl/technical/tax-alerts/thailand-plans-to-implement-global-minimum-tax-rules-under-oecd-, 검색일자: 2024. 11. 20.

105) Reuters, "Indonesia seeks to soften impact of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indonesia-seeks-soften-impact-global-minimum-corporate-tax-2024-10-04/?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4. 11. 20.

106) KPMG, "Global Minimum Tax in Malaysia,"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my/pdf/kpmg-2025-budget-global-minimum-tax-in-malaysia-reconsidering-tax-i>

- 특히 태국은 투자지원기금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개편을 통하여 불안정성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함¹⁰⁷⁾
 - 태국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은 기존 법인세 면제 혜택을 우대세율로 전환하고 그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태국은 대표적인 FDI 지원 세제혜택으로 법인세 면제(8년) 및 세율 50% 감면(5년)을 제공함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면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우대세율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함
 - 또한 법인세 외 기존 투자혜택의 유지 및 강화를 논의 중임
 - 태국은 수입 관세 면제, 외국인 투자자 토지 소유권 제공, 외국인 지식 근로자 고용 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¹⁰⁸⁾
 - 이러한 계획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기존 혜택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태국의 법인세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재설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우대세율 적용으로 대상기업에 추가세액이 발생할지라도, 사전에 세부담 예측성 높이고 계산절차 등을 단순화할 수 있음
- 주변국 가운데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기존 투자 지원책의 확대와 세제혜택 개편을 고려 중임¹⁰⁹⁾
 - 싱가포르와 홍콩은 첨단분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 및 기타 운영비용 지원과 같은 비조세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음¹¹⁰⁾
 - 싱가포르는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FDI 유치를 활성화

ncentives.pdf, 검색일자: 2024. 11. 20.

107) “Forvis Mazars - Thailand,” 태국 투자청(“BOI”)이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조치, <https://www.forvismazars.com/th/en/insights/doing-business-in-thailand/information-for-thai-business/boi2>, 검색일자: 2024. 11. 20.

108) ASEAN Briefing, “Investment Incentives for Foreign Businesses in Thailand,” https://www.aseanbriefing.com/news/investment-incentives-for-foreign-businesses-in-thailand/?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4. 11. 20.

109) 2023년 싱가포르와 홍콩의 FDI 유입액은 각 1,597억달러 및 1,127억달러임(UNCTAD, 2024)

110) 정현곤·이아라, 2022.

하고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현금 지원 비중이 높음

- 홍콩은 입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특구 등을 활용해 임대료 감면을 제공함
-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FDI 유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혜택 개편 방안을 도입 중임
- 싱가포르의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을 상쇄하는 목적으로 QRTC 및 투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공제 또는 환급하는 환급가능투자공제(Refundable Investment Credits, RIC)를 도입함¹¹¹⁾
- 홍콩은 2024년 신규투자 이민 제도(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CIES)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여 자국 내 자금 투입을 유도함¹¹²⁾

2. 아프리카: ATAF 대응을 중심으로

-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에 있어서는 ATAF(아프리카조세 행정포럼)¹¹³⁾의 지원을 받아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UN 등의 외부 국제사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대응함
- ATAF는 필라2 합의 과정에서 IF 가입국을 지원하며, GloBE 규칙 일부 및 STTR

111) EY, “Singapore proposes legislative changes for Refundable Tax Credits,” https://www.ey.com/en_gl/technical/tax-alerts/singapore-proposes-legislative-changes-for-refundable-tax-credit, 검색일자: 2024. 10. 11.

112) CIES에 따라 해당 투자자는 홍콩의 금융시장(주식, 채권 등) 및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지분 제한 없이 직접적 투자가 가능하며, 유사한 제도로 싱가포르의 최소 투자금액, 사업기간, 매출 기준 등을 부합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영주권 취득 권리를 부여하는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lobal Investor Programme, GIP)을 2004년부터 도입함.

113)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원조(Aid) 및 FDI를 계기로, 국내재원 동원(DRM) 강화를 통해 자체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 주요 역할(Mandate)로는 1)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행정 역량강화 2) 거버넌스 및 국가운영에 있어 조세의 역할 확대 3) 조세 관련 지식의 생산 및 확산을 통한 정책 및 법안수립을 지원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진 4) 지역 및 글로벌 플랫폼에서 아프리카 국가를 대변하여 국제조세 논의에 영향력 행사 5) 아프리카 국가간 및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이 있음. 2009년 발족 당시 25개국에서 시작하여 41개국으로까지 확대됨(2025. 1. 12. 기준)

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의견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IF에 참여 중인 아프리카 국가는 전체의 절반 정도로 저조한 편이며, IF 참여국 중 ATAF에 가입한 국가는 더욱 적어 ATAF가 글로벌 최저한세에 있어 아프리카 의견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아프리카 국가의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저조한 참여율은 협상 과정에서 GloBE 규칙 및 최저한세 적용 기준에 아프리카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이들에게 돌아갈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케냐와 같이 DST를 개별적으로 도입한 국가의 경우, 협상 초기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음
- 본 절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있어 ATAF를 통한 아프리카 국가의 대응 경과와 쟁점,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을 짚어보고자 함

가. 아프리카의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 아프리카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협상과정 및 대응에 있어 ATAF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크게 IF 참여국 대상 협상 지원과 아프리카 국가의 역량강화 지원, 그리고 아프리카의 입장 대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글로벌 최저한세 협상에 있어서는 IF에 참여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ATAF 산하 위원회인 국경 간 조세(Cross Border Taxation, CBT) 기술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및 정책적 자문을 제공함¹¹⁴⁾
 - 또한 회원국의 원활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GloBE 규정 관련 모델법안 제시, 정책적 고려방안 등의 자료 발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지원

114) ATAF는 산하에 공동기술위원회(JTC, Joint Technical Committee)가 있으며, JTC는 다섯 개의 위원회로 구성됨. CBT 기술위원회는 2014년 설립되었으며, 국제조세 분야의 기술적 업데이트 제공, AU, OECD, UN과 같은 지역, 국제무대에서 ATAF 사무국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

- 특히 현행 GloBE 규칙상 최우선순위에 있는 QDMTT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국내최저추가세액(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 모델법안을 배포, 아프리카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세 가지 접근방식(Approach)을 제시함
- ATAF는 IF의 옵저버이자 OECD의 주요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의 의견을 IF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및 보조기구(Subsidiary Bodies)에 전달하거나, 보도자료, 성명문(Statement)을 통해 아프리카의 입장을 다방면으로 대변함¹¹⁵⁾

〈표 Ⅳ-3〉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ATAF의 아프리카 지원 방향

구분	주요 내용
협상 지원	- IF 참여국 대상 CBT 기술위원회를 통한 정책 및 자문 제공
역량강화 지원	- GloBE 규칙 관련 모델법안(DMTT) 제시 등의 자료 발간 - ATAF 회원국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기술적 지원 등)
입장 대변	- IF 운영위원회 및 보조기구 대상 아프리카 입장 전달 -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아프리카 입장의 성명문 발표

자료: OECD, 2023.; ATAF, <https://www.ataftax.org/>, 검색일자: 2024. 12. 12.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Ⅳ-4〉 ATAF의 DMTT 모델법안 주요 내용 및 장점

구분	주요 내용 및 장점
접근방식 1: Skeleton Legislation and Detailed Regulations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략한 법률 조항(Provision)을 의회를 통해 제정하고, 세부적 내용은 보충 규정(Supplementary Regulation)으로 당국의 장관이 정하는 방식 - 규정에는 DMTT 계산과 관련된 여러 조항과 정의가 포함 - 규정은 GloBE 규칙을 직접 인용하거나 밀접하게 따르도록 구성되어 높은 일관성을 가짐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간결하여 GloBE 규칙 전체를 국내법에 통합하는 것 대비 의회의 입법 절차 간소화 - 대부분의 세부적 내용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장관의 책임하 관리 가능

115) OECD, “International Tax and Africa – OECD Report for the G7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2023, p. 18.; ATAF, <https://www.ataftax.org/>, 검색일자: 2024. 12. 12.

〈표 IV-4〉의 계속

구분	주요 내용 및 장점
접근방식 2: Reference Model	주요 내용: - GloBE 규칙을 참조하여 DMTT를 제정하되, DMTT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만 수정 장점: - Approach 1과 달리 세부규정 없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GloBE 규칙을 참조하여 GloBE 규칙과 최대한의 일관성을 유지 - 국가별 시행(Issue)해야 하는 규칙이 적음
접근방식 3: Full Form Legislation	주요 내용: - GloBE 규칙을 기반으로 모든 규칙을 기본 법률에 포함한 DMTT의 장문버전, 의회를 통해 제정함 장점: - 의회에 강한 감독 역할을 부여

자료: ATAF, *ATAF Suggested Approaches to drafting domestic minimum top-up tax legislation*, 202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ATAF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최저한세의 최종 합의 도출 과정에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으나,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 성과로는 발생한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원천지국(Source Countries)이 우선 과세하는 QDMTT의 도입과 GloBE 규칙과는 별개로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는 STTR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권을 보호한 것이 있음
 - 다만 현재까지 QDMTT 및 STTR 모두 아프리카 국가의 도입이 저조함
 -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기준 및 일부 GloBE 규칙에 대한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음
 - ATAF는 아프리카 지역 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의 세율과 기업의 기준 매출액을 각각 20% 및 2억 5천만유로를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15% 및 7억 5천만유로로 확정됨
 - GloBE 규칙에서는 아프리카의 경우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적기에 UTPR의 우선 적용을 제안했는데, IIR이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음

- 전반적으로 필라2 측면에서 보면 STTR 규정에 있어서는 ATAF의 의견이 다수 수용되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규정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에 불균형한 측면이 있음

〈표 Ⅳ-5〉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ATAF의 주요 성과

구분	아프리카 제안	제안 사유	결과	반영 여부	
Pillar 2	GloBE 규칙 ¹⁾	추가세액 발생 시 원천지국 우선권 부여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자원 동원 강화	QDMTT 도입	○
		UTPR 우선 적용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 과세권한의 불균형 조정	IIR → UTPR 순 적용	×
	최저한세율	20%	기존 저세율국과의 세율 차이가 크지 않음	15%	×
	매출액 기준	2.5억 유로	개발도상국 내 고액 납세자를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범위에 포함	7.5억유로	×
	STTR	GloBE 규칙보다 우선 적용	과세권 보호	STTR 우선 적용	○
		STTR 적용범위 확장	아프리카의 세무행정에서 있어 서비스 비용은 중요 이슈	그룹 간 서비스 비용 포함	○
		STTR 규정에 회피방지 규정 포함	행정역량이 낮은 국가 입장에서는 체계적 규칙이 중요	회피방지 규정 포함	○

주: 1. ATAF가 기술지원 과정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소규모 국가 중 하나의 조세조약에 의해 서비스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감소, 5년간 약 7,500만달러의 세원을 잃은 사례가 있음

1) GloBE 규칙 중 QDMTT의 경우 ATAF 외 다른 중저소득국(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과 같이 제안

자료: OECD(2023); Julie McCarthy(2022); ATAF, “ATAF Suggested Approaches to drafting domestic minimum top-up tax legislation,” 2024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ATAF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외적으로도 2024년 8월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임시 (Ad Hoc) 정부 간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UN 국제조세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ToR 초안(Draft)’ 협상 과정에 있어 회원국의 전문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및 기타 아프리카 지역 간 기구와 함께 아프리카의 의견 반영을 지원함¹¹⁶⁾

- 제7차 AU 전문기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역할에 따라 ATAF는 아프리카 측 협상 대표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채택된 UN 프레임워크 협정 ToR에 대해, ATAF는 아프리카의 이익이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함¹¹⁷⁾
- UN의 프레임워크 협정에는 ATAF 외 AU와 같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 간 기구도 참여하여 각자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반적인 방향성은 같았음¹¹⁸⁾
 - 특히 UN의 역할 확대 및 기구 설립은 모든 단체의 공통적 의견이었음
 - 그 외에는 조세 관련 현안 해결, 역량강화, 참여주체 확대(민간, 은행 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음
- ToR에 기반한 협상은 2025년에 시작되어 2027년까지 협정문의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나, UN은 더 많은 회원국이 있는 만큼 이러한 논의가 실현되기까지는 예정된 일정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¹¹⁹⁾

나. 저조한 참여도와 반대 사례

- OECD(202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포함된 Two-Pillar Solution 형성 과정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 및 ATAF가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음¹²⁰⁾
- 동시에 의제 설정이 지나치게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아프리카 및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의견 및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도 언급함

116) ATAF, "Global tax cooperation moves forward with adoption of UN framework ToR," <https://www.ataftax.org/global-tax-cooperation-moves-forward-with-adoption-of-un-framework-tor>, 검색일자: 2024. 12. 12.

117) ATAF, "ATAF welcomes adoption of draft terms of reference for 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https://www.ataftax.org/ataf-welcomes-adoption-of-draft-terms-of-reference-for-un-framework-convention-on-international-tax-cooperation>. 검색일자: 2024. 12. 12.

118) UNECA, 2023.

119) 5)와 상동

120) OECD, 2023.

- 아프리카 국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IF, 운영위원회 내 리더십에서 아프리카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BEPS 및 Two-Pillar Solution과 관련된 모든 실무 그룹의 리더십에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
 - 실제로 IF에는 아프리카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26개국만이 가입해 있는 상황으로, 참여도는 저조한 상황임
- ATAF에는 아프리카 대륙 내 54개국 중 41개국이 가입해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의 약 85%에 해당,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GDP 상위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¹²¹⁾¹²²⁾
- 그러나 ATAF 가입국 중 IF에 참여 중인 국가는 ATAF 가입국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23개국으로, ATAF가 아프리카 국가의 전체 입장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 IF 참여국이면서 ATAF 가입국인 국가들의 GDP 규모는 아프리카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나, 이 중 약 38%를 이집트, 남아공아프리카, 나이지리아 3개국이 차지함
 - 그 외 20개국 중 7개국이 아프리카 전체 GDP에서 개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 나머지 13개국은 1% 미만으로, 상위 3개국을 제외하면 이들이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점이 존재
 - IF 및 ATAF 모두 가입한 국가의 지역별 비중으로는 남아프리카(4개국, 약 80%), 서아프리카(9개국, 약 56%), 중앙아프리카(4개국, 약 44%), 북아프리카(2개국, 약 33%), 동아프리카(4개국, 약 22%) 순이었음
 - 서아프리카를 제외하고 IF와 ATAF 모두 가입한 국가의 지역별 비중과 이들이 아프리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령 GDP 비중이 낮은 남아프리카의 국가는 높은 IF 참여율을 보였으며, 반대로 GDP 비중이 큰 북아프리카의 국가는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121) ATAF, <https://www.ataftax.org/members>, 검색일자: 2024. 12. 12.

122) 국가가 아닌 령(Territory) 형태인 지역(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French Southern Territories) 및 세계은행의 소득수치가 없는 국가(Mayotte, Reunion, Saint Helena, Western Sahara)는 제외한 국가의 수입.

〈표 IV-6〉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별 IF 및 ATAF 참여 현황

(단위: 개, %)

지역 ¹⁾	지역 내 국가	아프리카 GDP 대비 비중(%)	IF 가입국 ²⁾	ATAF 가입국	IF, ATAF 중복 가입국 (참여율, %) ³⁾
동아프리카	18	19.51	4	15	4(22.22)
중앙아프리카	9	9.02	5	5	4(44.44)
남아프리카	5	14.26	4	5	4(80)
서아프리카	16	23.46	10	12	9(56.25)
북아프리카	6	33.75	3	4	2(33.33)
계	54	100	26	41	23(42)

주: 1) 아프리카 지역 분류의 기준은 유엔통계부(UNSD)의 Geographic Regions를 따름

2) IF 가입국 중 튀니지, 콩고공화국, 카보베르데는 ATAF 미가입국임

3) 참여율은 지역별 국가 수 대비 IF, ATAF 모두 가입한 국가의 비중을 의미

자료: OECD, "Members of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Updated 28 May 2024): ATAF," <https://www.ataftax.org/members>; 유엔통계부(UNSD),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검색일자: 2024. 12. 12.; World Bank Grou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검색일자: 2024. 12. 1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아프리카 국가들이 도입에 소극적인 원인 중 하나로 협상 과정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규정은 이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되지 않아 현행 체제 대비 도입 유인과 실효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됨

○ UNECA(2023)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포함된 필라2의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적 역량이 요구되나, 자원(Resource)이 부족한 아프리카는 필라2 도입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¹²³⁾

- 또한 필라2의 규정은 아프리카 국가의 기존 조세제도와 상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법을 대규모로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¹²⁴⁾

○ GloBE 규칙 측면에서 보자면 추가세액 과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는 QDMTT라는 소정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추가세액 발생 기준은 아프리카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이 ATAF 제안 대비 높게 설정되어, 아

123) UNECA, *Technical report: Promoting inclusive and effective tax cooperation at the UN*, 2023, pp. 35~36.

124) 7)과 상동

- 프리카 지역에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앞서 제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회사 기준 약 1만 5천개로, 전체 최저한세 대상 기업의 약 2% 이하임
- 최종모기업의 경우 자회사보다 더욱 적은 약 70개로 전체의 1% 미만인데, IIR이 UTPR보다 우선 적용되어 IIR에 의한 수혜는 매우 적음
 - 또한 모리셔스와 튀니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법인세율이 15% 이상이며, 그중 세율이 25% 이상인 국가는 아프리카 전체의 약 77%에 해당하는 45개국으로 최저한세의 세율인 15%를 크게 상회함¹²⁵⁾

〈표 IV-7〉 아프리카의 저조한 글로벌 최저한세 참여 요인

구분	문제점	아프리카 현황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제도의 복잡성 - 기존 조세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 행정역량 부족 - 대규모 세법 개정 부담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기준	- 매출액 기준이 높아 아프리카 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이 적음	- 자회사 기준 전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약 2%
↓		
최저한세율	- 2개국을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의 법인세율 15% 이상	- 아프리카 국가 중 45개국의 법인세율 25% 이상
↓		
GloBE 규칙 적용	- QDMTT 도입률 저조 - QDMTT 미도입 시 IIR이 우선 적용되어 수혜 가능성 적음	- QDMTT 적용국 2개국(~25) - 아프리카 내 UPE 비중 약 1%

자료: UNECA, 2023.;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 Aggregate totals by jurisdiction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1.; OECD, Corporate income tax rate, 2023.; OECD, <https://www.oecd.org/en/topics/global-minimum-tax.html>, 검색일자: 2024. 12. 1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그 외에도 케냐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 중 나이지리아와 함께 Two-Pillar Solution 협상 초기에 반대했던 국가 중 하나로, 필라1, 2 최종합의문 공개 당시(2021) 이에 서명하지 않았음¹²⁶⁾

125) 제II장 '다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소득그룹에서 명목법인세율이 실효세율보다 약 4.5~9%p 가량 더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대다수 국가의 최저한세율보다 높음.

- KRA(2023)에 의하면 케냐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반대한 이유는 낮은 최저한세의 세율과 과세회피 및 과세권에 대한 우려가 있음¹²⁷⁾
 - 케냐는 아프리카 전체의 의견과 같이 최저한세의 세율을 15% 대비 아프리카 평균 법인세율에 근접한 20%를 제안하며, 법인세 인하 경쟁의 방지를 주장
 - 또한 글로벌 매출이 증가하는 다국적기업이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익을 재구성(restructure) 및 조정(adjust)하는 등 새로이 도입되는 규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DST와 같은 일방적 조치의 철회 필요성은 케냐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요소 중 과세권 확립을 위한 협력(cooperation in assertion of tax sovereignty)을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 GloBE 규칙에 원활히 반영되지 않음
- Two-Pillar Solution 전체 측면에서는 2021년 기준, DST 도입 시 약 89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가 가능하나, Two-Pillar Solution을 도입할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11개가량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었음¹²⁸⁾
 - DST는 케냐의 디지털시장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필라1, 2의 최종합의문을 공개한 동년 1월에 이미 DST를 도입하였음¹²⁹⁾¹³⁰⁾
 -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입에 중점을 두었던 케냐 입장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예상 수혜 중 하나인 추가세액이 기존 DST로 인한 세수 대체 여부가 불분명하기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됨¹³¹⁾
- 그러나 케냐 정부는 2023년 Two-Pillar Solution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

126) KRA, "Navigating Complex Tax Consultations: An Assessment of Kenya's Engagement in the Inclusive Framework(IF)," 2023, pp. 5~8.

127) 126)과 상동

128) UNDP,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Deal - an African perspective," <https://www.undp.org/africa/blog/global-minimum-corporate-tax-deal-african-perspective>, 검색일자: 2024. 12. 12.

129) KRA, Introducing Digital Tax Service

130) DST의 세율은 총 거래금액(Gross transaction value)의 1.5%이며, 디지털 서비스의 범위는 다운로드 가능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전반을 포함

131) 123)과 상동

로 선회하였으며, IF에 참여함

- 입장을 선회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Two-Pillar Solution에 반대한 것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예상¹³²⁾
- 2024년에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DST를 ‘중요한 경제적실재세(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Tax, SEP Tax)’로 대체함

다. 향후 대응 방향

- 아프리카의 경우 ATAF의 지원 아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의한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
 -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현행 국제조세협력 체제하, 아프리카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UNECA(2023) 및 OECD(2023) 모두 큰 틀에서는 역량강화, 국제조세의 포괄적 논의,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라는 공통점이 있음
 - 역량강화 및 국제조세의 포괄적 논의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양 국제기구 모두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역량강화의 경우 UN은 자원의 배분이라는 초기 단계만을 언급한 반면, OECD는 현행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를 언급하고 있음
 - 국제조세의 포괄적 논의에서는 양 기구 모두 국제조세 범위의 확대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이나, UN의 경우 개발도상국을, OECD는 디지털화를 각각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있음
 -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 부문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OECD는 기존 BEPS 및 Two-Pillar Solution 체제에서 아프리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주된 내용임
 - 반면 UN의 경우 OECD 주도의 국제조세질서를 UN 산하 기구 또는 체제 설립 및 개발도상국과 민간부문의 참여(학계, 시민사회조직, 기업 등)를 강조하고 있음

132) Orbitax, “Kenya Shifts to Adoption of Two-Pillar Solution; Mulls more Investor-Friendly Measures — Orbitax Tax News & Alerts,” <https://orbitax.com/news/archive.php/Kenya-Shifts-to-Adoption-of-Tw-52400>, 검색일자: 2024. 12. 12.

〈표 IV-8〉 아프리카의 국제조세협력 참여 확대를 위한 UN 및 OECD 제안

시기	UN	OECD
역량강화	역량강화 및 지원 -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역량강화 - 개발도상국의 세무공무원이 국제조세 규정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에 UN의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의 배분	국제조세 사안에 대한 역량강화 및 기술 지원 - G7 및 협력국과 아프리카 국가 양자 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국가별보고서 등 BEPS 최소기준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 OECD, IGF, ¹⁾ ATAF Deep Dive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광물자원소득에 대한 과세역량 지원
국제조세의 포괄적 논의	국제조세협력 범위 확대 - OECD 중심의 디지털 과세를 넘어선 국제조세협력 범위 확대 - 조세회피 방지, 관할권 간 과세권 할당, IFF, ²⁾ 부유세 및 자산등록 등 - 현재의 조세규정을 고려 및 글로벌 사무스에 적합한 단순하며 관리 가능한 방안 고려	포괄적 조세정책에 대한 심층적 논의 - 법인세 외 기타 과세기반에 대한 역량강화 필요 - 디지털무역에 대한 부가세, IFF 방지, 조세행정 디지털화, 비공식 부문에 대한 과세 등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	투명성 및 상향식(Bottom-up) 참여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논의 초기부터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참여 독려	아프리카의 IF 참여 확대 - G7 주도에 의한 BEPS 및 2 Pillar Solution 실무그룹에 아프리카의 리더십 참여 확대 - 아프리카 지역 간 조세기구 및 협력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IF 의제 반영 노력 -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아프리카를 위한 브리핑 및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
	포용성 및 효과성 - 국제조세협력의 개발도상국 참여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제 보장 - UN 주관하 설립될 기구 또는 문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소규모 및 최빈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의견 반영 필요	
	거버넌스와 구조(Structure) - 포용성, 공정성 및 효과성의 원칙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UN의 경제사회이사회 하위기구 설립을 통한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플랫폼 제공	

〈표 Ⅳ-8〉의 계속

시기	UN	OECD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	OECD 독점체제 탈피 - OECD 주도의 국제조세 논의에 대한 한계, 복잡성,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UN 주도의 국제조세 논의 필요성 제기	
	지지(Advocacy)와 지원 - 아프리카의 정책결정자에 대한 G24, ATAF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 - 유엔 산하 기구 내 아프리카의 참여 및 영향력 확대	

주: 1) Intergovernmental Forum on Mining, Minerals, Met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IFGF)
 2) Illicit Financial Flows(IFF)
 자료: OECD(2023); UNECA(2023)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향후 아프리카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상기 언급한 제안 중 당면한 이슈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해 OECD 제안을 중심으로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UN 측 제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됨
- ATAF는 OECD 및 UN 모두에 대응하고 있는 아프리카 조세행정 분야의 대표적 기구로서, 아프리카 전체의 의견을 수렴 및 대변함에 있어 국가별 특성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함
 - 가령 본 장의 ‘나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TAF와 IF에 참여 중인 국가 중 GDP가 낮은 지역의 국가는 IF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는 현 체제보다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이 당국들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
 - 반면 케냐와 같이 아프리카 내에서 일정 수준의 경제력 및 역량을 갖춘 국가는 자체적으로 DST와 같은 세목을 도입 및 세수를 확보하고 있어 한때 글로벌 최저한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음
 - 즉 아프리카 국가들도 상황별로 입장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내에서도 경제적, 역량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아프리카의 UN 중심 국제조세 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향후 글로벌 최저한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서도 아프리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IFF의 경우 두 기구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아프리카의 차기 국제조세 관련 이슈로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음¹³³⁾

133) OECD(2014)에 의하면 IIF는 국내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금융 자금을 국외로 국외로 이전하려는 방법, 관행 또는 범죄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글로벌 기업의 뇌물 수수 및 조세회피, 무역가격 조작(trade mispricing) 등이 있음.

V. 결론 및 시사점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쟁점과 국가별 대응 사례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 모든 형태의 대응은 행정 및 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이 고려됨
 -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수 및 투자 등 밀접한 영향이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기존 법인세 혜택의 개편과 비조세혜택의 확대를 단기적으로 모색할 수 있음
 - 반면 법인세 고세율국 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부재로 직접적 영향이 적은 개발도상국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정책목표와 산업구조에 맞춰 세제 및 비조세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함
 - 특히 비조세혜택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 도입의 의의가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운영 및 평가 역량이 필요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조세체계 이행에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최저한세 및 관련 국제협력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조정국이면서 개별 국가와의 협력국으로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1. 개발도상국의 대응

가. 세제혜택 개편

-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율 및 세제혜택을 통한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제한하며, 이에 따라 관할국은 기존 세제혜택의 통합적인 개편이 요구됨
 - 특히 개발도상국은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음
 - 필라2 공통 적용하에 GloBE 규칙이 도입되면 국가별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가 구체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OECD(2022)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기업환경 저하 우려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세제혜택 개편 방안을 검토함¹³⁴⁾
 -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관할국의 법인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방지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가능 방안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세제혜택의 성격은 세제혜택은 소득기반(income-based)과 지출기반(expenditure-based)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혜택별 GloBE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음¹³⁵⁾
 - 기존 세제혜택에서 주로 적용되던 소득기반 면제 방안은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축소하고 실효세율을 줄여 기업의 추가세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출기반 세제혜택은 관할국 내 실질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라 적용되어 GloBE 적용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됨

134) OECD, "Tax Incentives and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2022,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ax-incentives-and-the-global-minimum-corporate-tax_25d30b96-en.html, 검색일자: 2024. 10. 11.

135) GloBE 실효세율=관할국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지출기반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대표적으로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 및 QRTC가 고려될 수 있음
 - GloBE는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여 유형자산 원가회수 허용분(즉시·가속상각), 연구개발비용 등은 별도 기간 없이 인정함¹³⁶⁾
 - SBIE는 관할국 내 구성기업의 인건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반영하여 소득공제 형태로 적용됨
 - QRTC는 구성기업이 세액공제를 위한 조건을 충족한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또는 현금등가물)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로 보조금 성격에 해당함¹³⁷⁾

〈표 V-1〉 법인세 세제혜택별 GloBE 실효세율 영향 분석

성격	세제혜택		실효세율 영향 ¹⁾	예상 결과
소득기반 (income-based) ²⁾	전체 면제		높음	대상조세 감소
	부분 면제		높음	대상조세 감소
	감세율(reduced rate) 적용		높음	대상조세 감소
지출기반 (expenditure-based)	소득공제 (deduction)	세금공제(tax allowance) ³⁾	높음	대상조세 감소
		즉시상각 및 가속상각 (immediate expensing and accelerated depreciation)	낮음	일시적 차이 (timing difference) 조정
		유형자산: 기계, 장비, 건물 ⁴⁾	없음	추가과세 없음
		단기사용 무형자산	낮음	추가과세 가능
	기타 자산	높음	추가과세 가능	
	세액공제 (credit)	적격환급가능 세액공제(QRTC) ⁵⁾	낮음	순소득 증가
기타 공제		높음	대상조세 감소	

주: 1) 실효세율은 관할국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해당함

2) 소득기반 세제혜택은 실효세율의 분자인 대상조세 합계를 감소시켜 실효세율을 낮춤

3) 세금공제(tax allowance)는 특정자산에 대하여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혜택임

4) 유형자산 공제는 과세표준 상의 SBIE에 반영하여 실효세율 영향 없음

5) QRTC는 요건 충족에 따라 환급하는 세액공제로 실효세율 분모인 순소득을 증가시키나 대상조세 조정과정에서 법인세 비용 감소로 가산하여 실효세율 영향을 낮춤

자료: OECD, 2022, p. 37, 〈Table 1〉 Mapping the impact of tax incentive instrument design in the GloBE ETR calculation 기반 저자 작성

136) GloBE 규정은 이연법인세 회계를 채택하여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 발생 후 5개 후속 연도 동안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한 회계연도 대상조세의 감소로 처리함 (OECD, GloBE Model Rules, Article 4.4)

13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2호

- 또한 GloBE 대상소득이 아닌 법인세 외 세목을 활용한 감면 방안도 고려됨
 -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급여세, 재산세와 같은 세목을 활용하여 세제혜택을 적용할 경우 GloBE 규정 및 실효세율 상에 영향 없음¹³⁸⁾

-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지출기반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데에는 도입 역량 및 차별화 측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발도상국은 조세지출 관리 역량이 미흡하므로 구체적 설계 없이 지출기반의 세제혜택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재정에 높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OECD는 지출기반 혜택 도입 시 공공재정 보호를 위하여 특정 지출항목 설정, 세제혜택의 한도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함¹³⁹⁾
 - 또한 GloBE 규정하에 환급형 보조금은 기존 세제혜택을 전환할 수 있으나 국제보조금 협정 등의 위반 우려가 존재함¹⁴⁰⁾
 - WTO 보조금협정(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기준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비차별 대우 조항을 위반한다고 볼 경우 보조금의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음
 -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경우 GloBE 규정에는 부합할지라도 EU 역내시장 왜곡에 해당하여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요 세제개편 방안은 선진국도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차별적인 접근이 어려운 반면 도입의 역량은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 이 외에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은 개발도상국의 기존 혜택 체계에 불확실성을 유발함
 - 개발도상국이 과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QDMTT의 적용이 필요하나, 이를 적용

138)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Report on Pillar Two Blueprint*, 2020b, p. 46.

139) OECD, “Tax Incentives and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2022,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ax-incentives-and-the-global-minimum-corporate-tax_25d30b96-en.html, 검색일자: 2024. 10. 11.

140) 김재경·정훈, 2023.; Kuzniacki and Visser, 2024.

할 경우 다국적기업그룹과의 투자협정이 무효화될 수 있음¹⁴¹⁾

- 이는 추가적인 투자자 유치를 저해하고, 기존 체결된 협정에 있어서도 다국적기업과의 분쟁 가능성이 존재함

- 개발도상국의 저조한 GloBE 규칙 도입은 불확실성에 대한 낮은 대응 역량과도 관련됨

나. 비조세혜택 확대

- 개발도상국은 기존 세제혜택의 효과를 상쇄하고 FDI 유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조세 기업지원 제도를 확대할 수 있음

- 비조세 지원 방식은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및 현금지원, 산업기반시설 구축, 현지인력 양성 등이 대표적임

-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의 현물성(in-kind) 혜택은 선진국 대비 개발도상국에서 추가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OECD의 2023 FDI 규제지수(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에 따르면 저소득 개발도상국일수록 FDI 관련 제도적 폐쇄성이 높은 경향을 보임¹⁴²⁾

- 토지 및 기반시설 등의 제공은 개발도상국의 미흡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다만 개발도상국이 효과적인 투자혜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기업환경 개선과 사회적 혜택 창출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함¹⁴³⁾

- 혜택에 따라 투자가 결정될 수 있는 민감 분야일수록 선별적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

141) Catherine B., "A global minimum tax: is Pillar Two fair for developing countries?," 2023. 7. 19., <https://www.ictd.ac/blog/global-minimum-tax-pillar-two-fair-developing-countries/>, 검색일자: 2024. 5. 24.

142) OECD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 지분 한도, 심사 및 승인 요건, 외국인 핵심인력 고용 제한, 민감 분야 투자 및 토지소유 제한 등 기준으로 측정함(<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sustainable-investment/fdi-regulatory-restrictiveness-index.html>, 검색일자: 2024. 5. 24).

143) James, 2013(revised in 2020), p. 27.

고용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업환경 개선은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국가별 전략산업의 법제도 개정과 현금지원 방안 등 비조세 혜택을 구체화할 수 있음¹⁴⁴⁾
- 개발도상국은 외국인 유입 제한이 높은 국가가 많으므로, 산업별 외국인 지분 한도 조정,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고용 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구체적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방안이 제안됨
 - FDI 지원기금은 전략분야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 보조금, 내국인 고용 등의 운영비용 지원을 포함함
 - 그 외에도 자국 내 사업활동에 밀접한 토지 임대료, 전력 등 유틸리티 비용 인하 등 혜택을 지원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위한 관련 정부의 데이터 공시, 세이프하버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제공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
- 특히 행정 절차 효율화와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자체적인 환경투자 측면에서도 중요함
- 투자자 등록 및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 방안을 비롯하여 행정정보 제공, 행정 디지털화 등의 효율화는 국내기업 사업활동을 함께 지원함¹⁴⁵⁾
 - 사회기반시설은 많은 국가의 전략분야인 첨단산업, 녹색 에너지 등을 고려하여 통신시설 안정화, 교통 환경 개선, 기술 개발 연구소 등 특화시설 제공이 제안됨¹⁴⁶⁾

144) Parada, 2024.

145) UNCTAD, 2022.

146) UNCTAD, 2023.

- 또한 이러한 혜택은 개발도상국 내 특정 산업단지 및 투자유치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기존의 SEZs는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낮은 장기경쟁력 및 경제효과의 비효율성이 지적됨¹⁴⁷⁾
 - 필라2 도입하여 비조세혜택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SEZs를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발도상국은 SEZs를 통하여 제한적 자본으로 기반시설 개발을 효율화하고 입주 기업의 수출입 지원 등을 집중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함
 - 최근 개발도상국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과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특구 모델이 제시됨¹⁴⁸⁾
- 한편 글로벌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고숙련 노동력 양성이 개발도상국의 주요 과제로 제시됨
 - 개발도상국의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은 FDI 유치의 주요 강점으로 여겨졌으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I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고숙련 노동자 수요가 확대됨¹⁴⁹⁾
 - 기술 교육 및 고숙련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는 다국적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음¹⁵⁰⁾

147) Ndubai-Ngigi et al., “The Global Minimum Tax and Special Economic Zones,” 2024, <https://www.iisd.org/publications/brief/global-minimum-tax-special-economic-zones>, 검색일자: 2024. 10. 11.

148) UNIDO, “New Trends in Special Economic Zones: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https://iap.unido.org/articles/new-trends-special-economic-zones-opportunities-developing-countries>, 검색일자: 2024. 10. 11.

149) World Bank,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mployment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 A Literature Review of the Effects of FDI on Job Creation and Wages,” 2020, <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956231593150550672/foreign-direct-investment-and-employment-outcomes-in-developing-countries-a-literature-review-of-the-effects-of-fdi-on-job-creation-and-wages>, 검색일자: 2024. 10. 11.

150) World Bank, “Global Investment Competitiveness Report 2019/2020: Rebuilding Investor Confidence in Times of Uncertainty,” 2020,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entities>

- 개발도상국의 고숙련 노동자 확보는 다국적기업을 통한 국내 기술 유입과 국내 임금 수준 향상의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조세혜택 또한 개발도상국 정부에 높은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데에 비해 효과평가 역량의 부족으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선진국과 비교하여 개발도상국이 세제혜택 중심의 FDI 유치 전략을 추진해 온 이유는 정부기금의 선투입에 대한 부담과도 관련이 있음¹⁵¹⁾
 - 재정자원의 확보 외에도 정책 도입에 대하여 그 효과 평가 역량이 낮아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존재함
 -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FDI 유치 전략이 자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설계 및 평가 체계가 부재함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OECD/G20 주도의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대응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기존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의 낮은 대표성과 제한된 이행 역량, 국가개발정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주요 문제로 제기함
 - 반면 개별 선진국도 새로운 국제 규범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함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안정적 도입과 시행은 국제협력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별 입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es/publication/ac1e9078-9cdf-5dcb-84be-16f5e30a6e6a, 검색일자: 2024. 11. 10.

151) World Bank, "Tax Expenditure Manual," 2024, <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099062724151636908/p174543148ba880bb188fd1ce06f588a6aa>, 검색일자: 2024. 10. 11.

- OECD는 BEPS 체계 수립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기구의 자문적 역할과 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함
 - 특히 BEPS 프로젝트 이해, 다국적기업 과세방안 등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됨¹⁵²⁾
 -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세수기반 강화, 행정 효율화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과제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는 못함
 - 향후 국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세무행정 역량 자체를 강화하고, 다자간 논의를 국가 간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단위의 대립을 조정하여 국가별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필라2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함
- 우리나라는 OECD IF의 필라2 도입과 함께 UN 프레임워크를 통한 국제조세협력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주요 조정국으로서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IF 체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UN 프레임워크 협정의 활동지침(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에서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함
 - 임시위원회는 활동지침을 통해 국제조세체계 이행 시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와 이행역량 강화를 강조함
 - 앞으로 OECD IF와 UN 프레임워크의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관련 규범 및 국제협력 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개별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국내 세무행정 및 성과평가 역량 미흡으로 국제조세체계의 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개발도상국의 주요 투자국으로, 국내모

152) OEC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2021,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ing-countries-and-the-oecd-g20-inclusive-framework-on-beps_170270aa-en.html, 검색일자: 2024. 5. 20.

- 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은 다수의 국가는 행정역량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경우임
- 개발도상국의 세무행정 효율화 및 기업 친화적 행정체계 개편 지원은 국가 간 상호 이익 기반의 협력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음
- 투자 결정 시 대상국의 거버넌스, 지리적 위치 등은 직접적 지원 혜택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¹⁵³⁾
 - 이를 위해 기업 대상의 절차 간소화 및 정보 공개의 투명성, 불안정 요소를 개선하고 내부 행정의 디지털화, 정보연계,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¹⁵⁴⁾
 - 이러한 지원은 기존 법인세 중심의 투자혜택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도상국의 세수 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으로의 전환 요구와도 부합함
- 또한 다자간 논의를 양자 또는 소수 국가 간으로 전환하여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GloBE 규칙 준수하에 국가 간 투자협정 등 개별 논의를 활용한 협의체계 구축이 가능함¹⁵⁵⁾
- 개발도상국 정부의 협상 역량이 미흡한 경우,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등이 표준형식, 지침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선진국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실리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153) James, 2013(revised in 2020); Ross, 2019; Le et al., 2024.

154) UNCTAD, 2024.

155) UNCTAD, "Investment Facilit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rends and Policy Options," 2023, <https://unctad.org/publication/investment-facilitation-international-investment-agreements-trends-and-policy-options>, 검색일자: 2024. 10. 11.

참고문헌

1. 문헌자료

김준석·김태경·한경배, 『국제조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23.

김학수,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김재경·정훈,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에서 조세정책적 주요 고려사항」, 조세학술논집, 제39집 제2호, 2023, pp. 97~155.

김정홍, 「국제조세질서의 현황과 전망 - BEPS를 중심으로-」,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제118호, 2023, pp. 108~121.

정현곤·이아라,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Andrew G. Ross, “Governance infrastructure and FDI flows in developing countries,”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view*, 11(2), 2019, pp. 109~119.

ATAF, *ATAF Suggested Approaches to Drafting Domestic Minimum Top-Up Tax Legislation Updated edition*, 2024.

Benedict J. Clement, Ruud A. de Mooij, Sanjeev Gupta, Michael Keen,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IMF, 2015.

Blazej Kuzniacki and Edwin V. Visser, “Tax and Non-Tax-Related Challenges of Pillar 2 for Non-Advanced Economies,” *Tax Notes International*, 114(6), 2024. pp. 881~898.

Das, Rasmi Ranjan.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Should

- Developing Countries Adopt It?,"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78(3), 2024.
- Felix Hugger, Ana Cinta Gonzalez Cabral, and Pierce O'Reilly, *Effective tax rates of MNEs : New evidence on global low-taxed profit*,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67, 2023.
- Hoi Q. Le, Thu H. Nguyen, Hung X. Nguyen, Uyen T. Phung, Huong T. Tran, Minh H. Trinh, Anh P. Hoang, "The impact of the Global Minimum Tax on Vietnam's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on," *Asia and Global Economy*, 4(2), 2024.
- IMF, *International Corporation Tax Reform*, 2023.
- John Bush, Michael Durst and Michelle M. Ogutu, *Impact of the OECD Inclusive Framework's Pillar 2 on Developing Countries: a Focus on Tax Incentives*, Policy Brief No.4, Committee on Fiscal Studies, 2022.
- Joy Waruguru Ndubai-Ngigi, Alexandra Readhead and Suzy H. Nikièma, "The Global Minimum Tax and Special Economic Zones," *IISD Policy Brief*, 2024.
- Julie McCarthy, *A bad deal for development: Assessing the impacts of the new inclusive framework tax deal o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Brookings Global Working Paper, No. 174, 2022.
- KPMG, *Pillar Two and Tax Incentives*, 2025.
- KRA, *Navigating Complex Tax Consultations : An Assessment of Kenya's Engagement in the OECD Inclusive Framework (IF)*, 2023.
- Leopoldo Parada, "Global Minimum Taxation: A Strategic Approach for Developing Countries," *Columbia Journal of Tax Law*, 15(2), 2024, pp. 187~211.
- Md. Shakib Hossain & Md. Ziaur Rahman, 2017. "Does Governance Facilit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ial Issues*, 7(1), pp. 164~177.
- Michael P. Devereux, John Vella and Heydon Wardell-Burrus, “Pillar 2 : Rule Order, Incentives, and Tax Competition,” *Oxford University Centre for Business Taxation Policy Brief*, 2022.
- OECD, *Illicit Financial Flows from Developing Countries: Measuring OECD Responses*, 2014.
- _____, *2015 Final Reports*, 2015a.
- _____,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Action 5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b.
- _____,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Action 13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c.
- _____, *Guidance on the preparation of anonymised and aggregated CbCR statistics*, 2020a.
- _____,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Report on Pillar Two Blueprint*, 2020b.
- _____,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2021.
- _____, *Tax Incentives and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2022.
- _____, *International Tax and Africa - OECD Report for the G7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2023a.
- _____,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Subject to Tax Rule (Pillar Two)*, 2023b.
- _____, *Corporate Tax Statistics : Anonymised and aggregated Country-by-Country reporting data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4a.
- _____, *Corporate Tax Statistics 2024*, 2024b.
- _____,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Global Minimum Tax: Summary*,

2024c.

Peter Hongler, Irma Mosquera, Filip Debelva, Vikram Chand, and Julien Chaisse, “UTPR — Potential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Law?,” *Tax Notes International*, 111(28), 2023. pp. 141~151.

Sol Picciotto, Jeffery M. Kadet and Bob Michel, “A Tale of Two Subject-to-Tax Rules,” *Tax Notes International*, 113(10), 2024, pp. 1235~1245.

James, Sebastian, Effectiveness of Tax and Non-Tax Incentives and Investments: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2013 (revised in 2020).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401905> or <http://dx.doi.org/10.2139/ssrn.2401905>

UN,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201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International tax reforms and sustainable investment*, 2022.

_____, *World Investment Report 2023 Investing in sustainable energy for all*, 2023.

_____, *World Investment Report 2024 Investment facilitation and digital government*, 2024.

UNECA, *Technical report : promoting inclusive and effective tax cooperation at the United Nations*, 2023.

World Bank, *The Global Minimum Tax: from agreement to implementation*, 2022.

2.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베트남, 「법인세(01/VBHN-VPQH)」

_____, 「투자지원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제182호(182/2024/ND-CP)

_____, 「특별 투자 인센티브 규정(29/2021/QD-TTg)」

_____, 「2023년 토지 임대료 감면에 대한 결정(25/2023/QD-TTg)」

_____, 「2023년 사회경제개발계획, 국가예산예산,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해결방안 결의안(01/NQ-CP)」

_____, 「2024년 기업환경 개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해결책의 지속적 이행에 관한 결의안(02/2024/NQ-CP)」

3. 온라인 자료 및 데이터

ATAF, <https://www.ataftax.org>

EY, https://www.ey.com/en_gl

FDI Intelligence, <https://www.fdiintelligence.com>

ILOSTAT, <https://ilostat.ilo.org>

Kenya Revenue Authority, <https://www.kra.go.ke>

Kluwer International Tax Blog, <https://kluwertaxblog.com>

KPMG, <https://kpmg.com/xx/en.html>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ttps://www.mpi.gov.vn/en/pages/default.aspx>

OECD, <https://www.oecd.org/en.html>

Oxfam America, <https://webassets.oxfamamerica.org>

Orbitax, <https://orbitax.com>

PwC, <https://www.pwc.com>

TADAT, <https://www.tadat.org>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

Tax Justice Network, <https://taxjustice.net>

The Banker, <https://www.thebanker.com>

The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

United Nations, <https://www.un.org/en>

UNIDO, <https://www.unido.org>

UNDP, <https://www.undp.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고찰」,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50747&mid=a30200000000&systemcode=03>, 검색일자: 2024. 5. 21.

『조선비즈』, 「로이터 “삼성전자·LG전자, 베트남 정부에 최저한세 보상 요구”」,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5/30/UXDNIZPRENDLNJGOWGBIX5YKDM>, 검색일자: 2024. 5. 29.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시장뉴스] 베트남 정부,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8% 지속 제안」, <https://www.kita.net/board/overseasMarketNews/overseasMarketNewsDetail.do?postIndex=1844096&boardType=0>, 검색일자: 2024. 5. 21.

Bangkok Post, “Bid to close profit shifting loophole,”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780519/bid-to-close-profit-shifting-loophole>, 검색일자: 2024. 11. 20.

Báo Đầu Tư Chứng Khoán, “Samsung CEO: Vietnam should gain the right to tax and add incentives,” https://www.tinnhanhchungkhoan.vn/tong-giam-doc-samsung-viet-nam-nen-gianh-quyen-danh-thue-va-bo-sung-uu-dai-post317957.html#google_vignette, 검색일자: 2024. 5. 29.

Catherine B. “A global minimum tax: is Pillar Two fair for developing countries?,” 2023. 7. 19., <https://www.ictd.ac/blog/global-minimum-tax-pillar-t>

wo-fair-developing-countries, 검색일자: 2024. 5. 24.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vietnam-pm-says-aiming-lift-2024-growth-above-7-2024-10-21>, 검색일자: 2024. 11. 20.

Reuters, “Indonesia seeks to soften impact of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indonesia-seeks-soften-impact-global-minimum-corporate-tax-2024-10-04/?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4. 11. 20.

VnExpress International, “Recapping a 35-year journey: Vietnam’s FDI,”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recapping-a-35-year-journey-vietnam-s-fdi-4679123.html>, 검색일자: 2024. 11. 20.

VnExpress, “Global minimum tax unlikely to inhibit FDI flows into Vietnam: experts,”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global-minimum-tax-unlikely-to-inhibit-fdi-flows-into-vietnam-experts-4699587.html>, 검색일자: 2024. 5. 24.

OECD, *Corporate Tax Statistics 2024*, 2024a.

_____,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https://data-explorer.oecd.org>

_____, “OECD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 Scores,” <https://data-explorer.oecd.org>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https://taxfoundation.org/data/all/global/corporate-tax-rates-by-country-2023>

UN, “Standard country or area codes for statistical use (M49),”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World Bank, “The World by Income and Region,” <https://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the-world-by-income-and-region.html>

세정연구 24-0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쟁점 및 대응방안

발행 2024년 12월 31일

저자 김빛마로 · 김세인 · 장석민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세일포커스(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ISBN 979-11-6655-335-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정연구 24-0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쟁점 및 대응방안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